

**실전**

**브라질**

고객의 소리(VOC)를  
기반으로 작성한

**진출  
가이드북**

2016~2021년 6년간 고객이  
상파울루 홈페이지 <무역관 고객의 소리>에 문의한 내용 중  
핵심만 정리한

**생생한 브라질 진출 안내서**

## I.

### 브라질 시장 진출 / 기업 운영 시 발생하는 궁금증

4

1. 세무/관세
2. 노무
3. 인증
4. 통관
5. 기타

## II.

### 최근 3년간 상파울루 무역관에 접수된 Q&A 통계

86

## III.

### 카테고리별 전문가 및 컨설팅 업체

88

1. 세무
2. 노무
3. 통관
4. 인증 대행 업체
5. 업체 연락처 및 사기 유무 확인
6. 주요 로펌/회계/통관 업체

## 머리말

브라질은 인구 2억 1천만 명, GDP 12위의 거대한 시장으로 우리 기업은 오래전부터 브라질 시장 진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언어, 문화, 거리의 간극이 큰 까닭에 브라질 시장 진출 관련 자료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상파울루 무역관은 소통 채널을 만들고 브라질 시장 진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VOC(Voice Of Customer)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브라질에 진출하기를 희망하는 업체들은 이곳에 관세, 세무, 노무, 무역 사기 등 많은 질문을 남긴다.

본 사례집을 엮으며 무역관은 지난 6년간의 VOC 질문을 분석하였고, 고객이 자주 남기는 질문들을 종합하여 ‘세무/관세’, ‘노무’, ‘인증’, ‘통관’, ‘업체 연락처 및 사기 유무 확인’ 등으로 카테고리화하였다.

브라질 시장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은 타 기업들이 자주 남기는 질문들을 스테디하며 신규 시장에 진출하는 데 동반되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진출 전략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VOC 사례집에 원하는 질문이 없을 경우, 상파울루 무역관 홈페이지에 문의하면 48시간 안에 답변을 받을 수 있으며, KOTRA 담당자가 고객에 맞는 사업이나 서비스를 소개해 주기도 한다.

이 도서를 통해 브라질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들이 브라질 시장에 대한 두려움과 막연함을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책은 상파울루 무역관 최선욱 차장과 신재훈 과장의 주도로 집필되었으며, Pallota Martins(로펌), Wintec(회계 법인) 등 여러 기관의 자문으로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하였다.

I .

## 브라질 시장 진출 / 기업 운영 시 발생하는 궁금증

### 1. 세무/관세

#### ✓ 무역 협정

**(메르코수르)** Mercosur 회원국은 현재 공동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FTA 미체결국에는 4개국이 공동으로 기본 관세율을 적용하고, FTA 체결국은 FTA 협정세율을 공동으로 적용한다고 이해하면 될지요? 준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지 않은 나라는 에콰도르, 기아나, 수리남입니다. 이 중 에콰도르는 일전에 문의한 적이 있기에 기아나, 수리남으로 하기 아이템들을 수출할 시 발생할 현지 수입 관세율을 문의 드립니다.

- ① 한국산 변압기 (8504.34 & 8504.22 & 8504.23)
- ② 한국산 GIS(가스 절연 개폐기 / 8537.20 & 8535.29)
- ③ 중국산 GIS(가스 절연 개폐기 / 8537.20 & 8535.29)

감사합니다.

### (답변) 메르코수르 공동 관세 및 관세 감면 혜택

메르코수르 회원국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4개국으로 역내 국가 간의 무역 거래 시에는 대부분 관세가 면제됩니다. 한편, 역외 국가(제3국)로부터 제품을 수입할 경우, 특별히 FTA나 관세 감면 협정을 체결하고 있지 않은 한, 대외 공동 관세(TEC)가 적용됩니다. 현재 브라질은 전 세계에서 이집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3개 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있는데, 이 중 브-팔레스타인 간 FTA는 아직 미발효 상태입니다. 이 밖에도 브라질은 남미통합연합(ALADI) 국가와 관세 감면 협정을 체결하고 있고, 멕시코,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등과는 자동차 분야 제품 관세 감면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한국 또는 중국산 제품을 에콰도르나 기아나로 수출하는 경우 부과되는 현지 수입 관세는, 이곳 브라질에서는 정보가 부족하여 안내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에콰도르나 기아나는 메르코수르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남미 공동 관세(TEC)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국가로 수출 시 적용되는 관세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한국 정부기관(대사관, 영사관, 코트라 등)에 직접 문의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메르코수르)** 당사는 자동차 부품 업체로 소형 SUV 차량에 시트용 원단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브라질로 직접 수출할 경우 브라질 현지 수입 관세율과 부가세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수출 물품 HS CODE는 5903.20입니다. 그리고 당사에서 브라질로 직접 수출하는 대신 당사 원단을 우루과이 소재 업체로 수출하여, 우루과이 업체에서 수입해서 추가 공정(폴리우레탄 적층, LAMINATION)을 수행하여 브라질 소재 업체로 수출할 경우 브라질과 우루과이 간의 자동차 자유 무역 협정(FTA) 체결로 브라질 수입 관세가 면제된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는데, 맞는 내용인지 문의 드립니다. 당사에서 우루과이로 수출할 물품 HS CODE는 5903.90이며, 우루과이에서 추가 공정(폴리우레탄 적층, LAMINATION) 후 브라질로 수출되는 물품 HS CODE는 5903.20입니다.

**(답변)** 우루과이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와 함께 메르코수르 회원국에 속해 있습니다. 회원국 사이에서는 많은 품목을 관세 없이 수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브라질은 우루과이와 자동차 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우루과이에서 생산해서 브라질로 수출하는 자동차 관련 제품 다수 품목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관세 정보 사이트를 통해 확인한 결과, HS CODE 5903.20 및 5903.90 어느 코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우루과이에서 생산해서 브라질로 수출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루과이산 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국산 부품 사용률(우루과이산 부품 50% 이상 사용) 등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 같은 사항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ACE-55)** 본사는 Brake Pad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로서 금번 멕시코에서 위탁 생산을 한 후 이를 브라질로 수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멕시코와 브라질 간에는 ACE-55라는 협약이 체결되어 있어 원산지 결정 기준상 멕시코산으로 인정을 받아야만 수출 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멕시코산으로 원산지 결정을 받기 위한 조건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자동차 조립을 목적으로 멕시코 - 브라질 수출 시 원산지 결정 기준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정보가 있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A/S 목적으로 수출할 경우, 자동차 조립용 제품과 A/S 용품에 원산지 결정 요율이 다르게 적용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브라질-멕시코 자동차 협정(ACE-55)에 따르면, 멕시코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역내 생산 비중이 최소 35%이었으나 2019년 3월 19일부터 40%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브라질과 멕시코 사이에 경제 보완 협정 ACE-53과 ACE-55 확대를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향후 원산지 기준에도 모종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정되거나/공식적, 확정적으로 발표된 사항은 없습니다. 원산지 기준 관련 규정에 따르면, 수출 목적에 따라 자동차 조립용 제품과 A/S 용품의 원산지 결정 요율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원산지 기준 관련 자료(포르투갈어, 영어 버전 없음)는 아래 링크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멕시코 원산지 기준 규정**

[http://www2.aladi.org/biblioteca/publicaciones/aladi/acuerdos/ace/pt/ace55/web/ACE\\_055\\_Anexo\\_02\\_pt.pdf](http://www2.aladi.org/biblioteca/publicaciones/aladi/acuerdos/ace/pt/ace55/web/ACE_055_Anexo_02_pt.pdf)

**(ACE-55)** 멕시코에서 제품 제조 후 브라질로 선적 시, 3국 간 무역으로 진행할 경우 브라질 내 수입 세율 감면 혜택이 있는지요?

**(답변)** 멕시코 현지화율 40%의 기준은 멕시코 내에서의 자재 및 부가 가치만을 포함한 것이며, NAFTA 지역 자재 및 부가 가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019년 3월 19일 발표된 ‘메르코수르-멕시코 자동차 분야 자유 무역 협정’에 근거하여 멕시코 현지화율 40% 이상 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브라질 내 관세가 면제됩니다.

\* 메르코수르-멕시코 경제 보완 협정 ACE-55의 마지막 단계 ‘자유 무역’을 의미하며 현재는 자동차 분야에서만 자유 무역이 실시되고 있음.

**(ACE-55)** 안녕하세요. 고무 자동차 부품 호스와 웨더스트립(HS CODE: 4009.31/4016.93) 제조업체입니다. 멕시코와 브라질에 이미 법인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해당 제품들이 2019년 3월 발표된 자동차/자동차 부품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관세 사이트 TECWIN을 통해 HS CODE 4009.31과 4016.93 품목을 조회한 결과, 동 품목들은 메르코수르-멕시코 경제 보완 협정(ACE-55)이 규정하고 있는 관세 수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브라질/메르코수르 남미 국가 다수와 체결한 ‘지역 관세 협정(PTR4-Acordo de Alcance Regional)’에 해당되기 때문에, 동 협정에 의거, 20%의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HS CODE 4009.31 제품의 경우, Full Tariff 14%에서 20%가 감면된 11.2%의 관세가 적용되며, 4016.93 제품에는 Full Tariff 16%에서 20%가 감면된 12.8%가 적용됩니다.

## \* 참고

지역 관세 협정(PTR 4-Acordo de Alcance Regional)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멕시코, 콜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쿠바, 파나마 등 중남미 13개국이 체결한 관세 협정입니다. PTR 4는 품목 및 국가에 따라 감세율이 달라지므로 브라질 정부 사이트를 통해 쉽게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코트라 상파울루 무역관으로 문의 주시면 세율을 확인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 지역 관세 협정(PTR 4-Acordo de Alcance Regional)

<http://siscomex.gov.br/acordos-comerciais/aladi-2/preferencia-tarifaria-regional-entre-paises-da-aladi-ptr-04/>

**(ACE-55)** 안녕하세요. 저희는 자동차용 너트(HS CODE: 731816)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멕시코 법인을 설립하여 현지에서 너트를 생산하고, 브라질로 수출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지에서 생산하는 데 쓰이는 너트의 원자재(코일 형태의 철강)는 멕시코산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자재를 공급받아, 현지에서 단조 및 후공정을 모두 진행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브라질 국가 간에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협약이 있는지, 만약 적용 가능한 협약이 있다면, 멕시코산이 아닌 원자재를 사용하여 생산한 너트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 및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협약을 통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없는 경우 각각의 관세율을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멕시코 현지에서 생산한 너트가 멕시코산으로 판정을 받기 위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멕시코와 브라질이 체결한 협정은 ACE-55, PTR 4 등이 있는데, ACE-55는 자동차 및 부품에만 해당되는 것이라 너트 제품과는 무관합니다. 한편 PTR 4는 매우 광범위한 제품에 적용되는데 HS CODE 7318.16 제품도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7318.16 제품의 수입 관세는 본래 16%이나 브라질과 멕

시코가 체결한 관세 우대 협정 PTR 4에 의거하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멕시코산 너트(7318.16 기준)를 수입할 경우 16%가 아니라 12.8%의 수입 관세가 적용됩니다. 멕시코 현지에서 생산한 너트가 멕시코산으로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현지화율 40% 이상을 준수해야 합니다.

**(ACE-55)** 당사는 멕시코에 자동차 휠 제조 공장 설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생산 제품은 알루미늄 로드 휠(HS CODE: 8708.70)입니다. 본 제품을 멕시코에서 제조하여 브라질로 수출할 경우 관세율 및 부가세율은 몇 %인지요?

**(답변)** 멕시코에서 생산된 8708.70 제품을 브라질로 수출하는 경우, 수입 관세 0%(메르코수르-멕시코 간 경제 보완 협정 ACE-55에 의거 면제), 공업세 5%, 사회 기여세(PIS/PASEP) 3.12%, 사회 보장세(COFINS) 14.37%, 유통세(ICMS)\* 18%가 부과됩니다.

\*유통세의 경우, 상파울루 주 내 유통 시 기본적으로 18%가 부과되나, 제품 사양이나 이동 지역 등 여러 변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세무사 등 전문가만이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경제 보완 협정)** 원산지가 콜롬비아인 플라스틱 포장 용기를 브라질로 수출하려 하는데 메르코수르 공동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적용받을 수 있다면 혜택 관세율은 얼마나 될까요?

**(답변)** 메르코수르(남미 공동 시장)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4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콜롬비아가 원산지인 제품에는 남미 공동 관세(TEC)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HS CODE 3923.21 제품은 브라질과 콜롬비아가

체결한 경제 보완 협정(ACE-59/ ACE-72)에 의거하여, 수입 관세를 100%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3923.21 제품의 수입 관세(full tariff)는 18%이나, 경제 보완 협정에 의한 세금 혜택으로 수입 관세가 면제됩니다.

※ 참고

▪ **경제 보완 협정: ACE(Acordo de Complementação Económica)**

- 경제 보완 협정 체결은 중남미 국가 간 경제 통합의 첫 번째 단계임.
- 관세 등 무역 장벽을 감소 또는 철폐하여 자유 무역 단계에 도달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함.
- 현재 브라질은 단독 또는 메르코수르 회원국 전부의 동의하에 중남미 국가 다수와 경제 보완 협정을 체결하고 있음.
- 브라질에서 경제 보완 협정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기관은 대외무역국 CAMEX임.

협정	체결국 및 관련 문서
<b>ACE-02</b>	브라질 - 우루과이 <a href="http://siscomex.gov.br/acordos-comerciais/brasil-uruguai-ace-02/">http://siscomex.gov.br/acordos-comerciais/brasil-uruguai-ace-02/</a>
<b>ACE-14</b>	브라질 - 아르헨티나 <a href="http://siscomex.gov.br/acordos-comerciais/brasil-argentina-ace-14/">http://siscomex.gov.br/acordos-comerciais/brasil-argentina-ace-14/</a>
<b>ACE-18</b>	메르코수르(브라질 - 아르헨티나 - 우루과이 - 파라과이) <a href="http://siscomex.gov.br/acordos-comerciais/mercosul/mercosul-ace-18/">http://siscomex.gov.br/acordos-comerciais/mercosul/mercosul-ace-18/</a>
<b>ACE-35</b>	메르코수르 - 칠레 <a href="http://siscomex.gov.br/acordos-comerciais/mercosul-chile-ace-35/">http://siscomex.gov.br/acordos-comerciais/mercosul-chile-ace-35/</a>
<b>ACE-36</b>	메르코수르 - 볼리비아 <a href="http://siscomex.gov.br/acordos-comerciais/mercosul-bolivia-ace-36/">http://siscomex.gov.br/acordos-comerciais/mercosul-bolivia-ace-36/</a>

협정	체결국 및 관련 문서
<b>ACE-53</b>	브라질 - 멕시코 <a href="http://siscomex.gov.br/acordos-comerciais/brasil-mexico-ace-53/">http://siscomex.gov.br/acordos-comerciais/brasil-mexico-ace-53/</a>
<b>ACE-54</b>	메르코수르 - 멕시코 <a href="http://siscomex.gov.br/acordos-comerciais/mercosul-mexico-ace-54/">http://siscomex.gov.br/acordos-comerciais/mercosul-mexico-ace-54/</a>
<b>ACE-55</b>	메르코수르 - 멕시코 * 자동차 관련 제품 <a href="http://siscomex.gov.br/acordos-comerciais/automotivo-mercosul-mexico-ace-55/">http://siscomex.gov.br/acordos-comerciais/automotivo-mercosul-mexico-ace-55/</a>  * 2019년 3월 19일 브라질-멕시코 자동차 분야 자유 무역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양국 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출입에 대해 관세 및 쿼터가 면제됨. 2002년 브라질을 비롯한 메르코수르 회원국과 멕시코는 자동차 분야 경제 보완 협정 ACE-55를 체결했고 동 협정에 따라 브라질과 멕시코는 자동차 분야에서 쿼터를 설정하고 쿼터 범위 내에서 무관세로 수입 및 수출을 해왔음. ACE-55의 합의 내용은 2002년부터 점진적으로 쿼터를 늘려 2015년에 무관세 자유 무역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었으나 브라질과 멕시코는 2015년 쿼터 연장에 합의, 자동차 분야 자유 무역 협정 발효 시기가 2019년 3월로 연기됨.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은 브라질과 멕시코 간 주요 무역 품목으로 동 협정으로 승용차 및 상용차, 자동차 부품에 대한 쿼터와 관세가 철폐됐고 2020년부터는 트럭과 버스도 자유 무역 품목에 포함됨.
<b>ACE-58</b>	메르코수르 - 페루 <a href="http://siscomex.gov.br/acordos-comerciais/mercosul-peru-ace-58/">http://siscomex.gov.br/acordos-comerciais/mercosul-peru-ace-58/</a>
<b>ACE-59</b>	메르코수르 - 콜롬비아 - 에콰도르 - 베네수엘라 <a href="http://siscomex.gov.br/acordos-comerciais/mercosul-can-ace-59-brasil-equador/">http://siscomex.gov.br/acordos-comerciais/mercosul-can-ace-59-brasil-equador/</a>
<b>ACE-62</b>	메르코수르 - 쿠바 <a href="http://siscomex.gov.br/acordos-comerciais/mercosul-cuba-ace-62/">http://siscomex.gov.br/acordos-comerciais/mercosul-cuba-ace-62/</a>
<b>ACE-69</b>	브라질 - 베네수엘라 <a href="http://siscomex.gov.br/acordos-comerciais/brasil-venezuela-ace-69/">http://siscomex.gov.br/acordos-comerciais/brasil-venezuela-ace-69/</a>
<b>ACE-72</b>	메르코수르 - 콜롬비아 <a href="http://siscomex.gov.br/acordos-comerciais/mercosul-colombia-ace-72/">http://siscomex.gov.br/acordos-comerciais/mercosul-colombia-ace-72/</a>

협정	체결국 및 관련 문서
<b>ACE-74</b>	브라질 - 파라과이 <a href="http://siscomex.gov.br/acordos-comerciais/brasil-paraguai-automotivo-ace-74/">http://siscomex.gov.br/acordos-comerciais/brasil-paraguai-automotivo-ace-74/</a>

자료원: SISCOMEX

**(이집트 FTA)** 메르코수르 - 이집트 간 FTA가 체결돼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집트에서 물품을 제조하여 브라질 수출 시 면도기 제품 (8212.10, 8212.20)의 세 금 혜택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베트남 제조 - 브라질 수출 시 관세율과 멕시코 제조 - 브라질 수출 시 관세율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8212.10 제품에는 II(수입세) 18% IPI(공업세) 12% PIS/PASEP(사회 기여세) 2.1% COFINS(사회 보장세) 9.65% ICMS(유통세) 18%가 부과됩니다. 8212.20 제품에는 II(수입세) 18%, IPI(공업세) 15%, PIS/PASEP(사회 기여세) 2.1%, COFINS(사회 보장세) 9.65%, ICMS(유통세) 18%가 부과됩니다. 유통세는 주(州)마다 상이하며 상파울루 주의 경우는 18% 부과됩니다. 이집트 제조 시에는 메르코수르 - 이집트 FTA에 의거하여 수입 관세가 100% 면제됩니다. 그러나 베트남 또는 멕시코에서 제조된 경우에는 수입세 혜택이 없습니다.

**(관세율 사이트)** 브라질 품목별 관세율을 열람할 수 있는 사이트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브라질에서는 남미공동관세 TEC(Tarifa Externa Comun)를 사용합니다. 품목을 구분할 때 HS CODE(10자리) 대신 NCM(8자리)을 사용하는데, HS CODE와 NCM은 품목 구분에 있어서 크게 차이나는 점은 없습니다. 브라질에

서 품목(NCM)별로 적용되는 수입 관세율은 CAMEX(대외 무역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업세(IPI), 사회 기여세(PIS/PASEP), 사회 보장세(COFINS), 유통세(ICMS) 등 부과세율은 변동이 잦고 브라질 정부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저희 상파울루 무역관으로 문의 주시면 바로 확인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무역관은 관세 사이트 TECWIN을 사용하여 품목별 세금을 조회하며, 유료 사이트이기 때문에 일반인은 접근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수입 관세율 조회

<http://www.camex.gov.br/tarifa-extern1a-comum-tec/tec-listas-em-vigor>

## ✓ 서비스 세금

**(서비스 세금)** 안녕하세요. 저희는 의료 영상 솔루션 업체입니다. 브라질 현지 유통사를 통해서 자사 제품을 유통하려고 하는데요. 본 제품은 별도 수출 통관이 필요 없는 Software 제품으로서 인터넷 연결만 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지 Distributor가 Price table을 제시하였고, importation tax, sales tax 두 가지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Import tax) CIDE: 10%, PIS/COFINS: 3.65%, IR: 15% Total 28.65%의 수입 관세 - 수입가에서 Mark-up 되는 형태**

**(Sales tax) ISS : 5%, PIS/COFINS: 3.65%, IRPJ/CSLL: 11.60% Total 20.25%의 Sales Tax**

수입/통관이 필요 없는 소프트웨어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Tax가 부과되는 데 대

해 의문점이 많은데요. 위의 세금들이 부과되는 게 맞는지, 만일 맞다면 수입자에게 환급되는 세금은 없는지, 환급이 이루어진다면 현금으로 환급되는지, Credit 형태인지, Credit 형태라면 다음번 동일 제품 세금 납부 시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 (답변) ①수입 시 부과되는 세금

브라질 업체가 외국 업체로부터 SW나 서비스를 수입하는 경우, IR(법인 소득세) 15%와 경제 기여세(CIDE) 10%를 납부합니다. 동 세금은 원천 징수한 후 나머지를 보내드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PIS/COFINS는 사회 기여/사회 보장 세금인데, 이제까지 저희 무역관에 접수된 SW나 서비스 수출 문의에는 PIS/COFINS 적용 여부를 언급하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동 세금은 수입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수출 품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SW든 서비스든 현지에서 벌어들이는 금액에 대해 수출자가 세금을 부담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원천세이고 수입자가 현지에서 공제하고 보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계약하실 때 이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계약 금액에 반영하셔야 나중에 현지에서 송금 받으시는 금액에 문제가 없게 됩니다.

② 판매 시에 부과되는 세금은, 브라질 기업이 채택한 납세 방식이나 품목에 따라 다르나, 상기에 언급한 세금들은 제품 판매 시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세금들로 보입니다.

③ 환급이 가능한 세금은 ICMS, IPI, PIS/COFINS 등 3가지가 있으며, 각각의 세금은 크레딧 형태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크레딧트는 생산에 필요한 기계 및 원자재 구입, 전기요금이나 운송비 납부 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 상으로 환급이 가능하나, 실제로 세금을 돌려받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업체들은 세금 부담분을 가격에 전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비스 세금)** 안녕하세요!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IT\_SAP SW 공급은 브라질 - 한국 국제 조세 협약상 원천 징수 대상이 아님에도 주거래 은행이 원천징수를 하는 대신, 거래 업체에서 법인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고, 대금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 하였습니다. 브라질 법규상 적용되는 명확한 법령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 브라질 업체가 외국 업체로부터 서비스를 수입하는 경우, IRPF(법인 소득세) 15%와 경제 기여세(CIDE) 10%를 납부하게 되므로 동 세금을 원천 징수한 후 나머지를 보내드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SW 수출이든 아웃소싱(서비스)이든 현지에서 벌어들이는 금액에 대해 수출자가 세금을 부담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원천세이며 수입자가 현지에서 공제하고 보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계약하실 때 이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계약 금액에 반영하셔야 나중에 현지에서 송금 받으시는 금액에서 문제가 없게 됩니다.

#### ■ 법적 근거

**법인 소득세(IRPJ):** RIR-99 - Decreto nº 3.000 de 26 de Março de 1999  
<https://www.legisweb.com.br/legislacao/?id=53754>

#### **경제 기여세(CIDE):**

- Lei nº 10.168/2000  
[http://www.planalto.gov.br/ccivil\\_03/leis/l10168.htm](http://www.planalto.gov.br/ccivil_03/leis/l10168.htm)
- Lei nº 10.332/2001  
[http://www.planalto.gov.br/ccivil\\_03/leis/leis\\_2001/l10332.htm](http://www.planalto.gov.br/ccivil_03/leis/leis_2001/l10332.htm)
- Lei nº 11.452/2007  
[http://www.planalto.gov.br/ccivil\\_03/\\_ato2007-2010/2007/lei/L11452.htm](http://www.planalto.gov.br/ccivil_03/_ato2007-2010/2007/lei/L11452.htm)

## ✓ 세금 환급

**(세금 환급)** 브라질에서 발생하는 세금 중에서 환급 가능한 세금은 무엇인가요?

**(답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세금은 ICMS, IPI, PIS/COFINS 등 3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의 세금은 ‘크레딧’ 형태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생산에 필요한 기계 및 원자재 구입, 전기 요금이나 운송비 납부 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ICMS(유통세)의 경우, 기업의 과세 산정 방식이 ‘예상 소득’과 ‘실소득’인 경우에 크레딧 형태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크레딧은 운송비, 전기 요금(수출용 제품인 경우) 납부 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화물 운송 업체의 경우 운송에 필요한 연료 등을 구입할 때 크레딧을 활용할 수 있고 일반 기업의 경우는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나 중간재를 구입하거나 제품 반환 시에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브라질에 진출한 기업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세금 환급 절차도 복잡하고 관료 주의적 행정의 병폐가 심해, 적립한 크레딧을 실제로 사용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세무사나 회계사 등 전문 인력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반품 및 세금 환급)** 2017년 말경 브라질로 볼베어링을 수출하였고, 제품에 하자가 발견되어 다시 한국으로 리턴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브라질에서 최초 수입 시 납부하였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관세 및 기타 세금) 환급이 가능하다면, 그 조건(재반출 기간 등…), 방법 및 환급 가능한 세금 등을 자세히 확인 부탁드립니다. 특히, 재반출 이행 기간이 몇 년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는 수입한 제품을 2년 이내 동일 제품을 재반출 시 최초 수입 시 납부하였던 관세 및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제품에 하자가 발견되어 다시 원산지로 반품될 경우, 브라질에서 최초 수입 시 납부하였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하자를 수리하여 재수입할 경우에는 세금이 면제되는데, 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브라질 연방 세무국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재반출 이행 기간 등 하자 반품 관련 절차는 케이스별로 상이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안타깝게도 동 분야 전문 지식 부족으로 저희가 안내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오니 현재 거래 중인 브라질 바이어와 반품 절차에 대해 상의하셔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불량으로 판정된 제품이 반송되고 재수입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샘플/면세)** 폐사는 PDA, Handheld 제품을 생산/수출하는 기업입니다. 중남미 국가에 수출을 하며 브라질에도 Distributor를 통해 수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휴대용 단말기(Handheld) 제품의 구성품인 배터리에 대해 Recall을 진행하며 브라질 Distributor에 무상으로 공급하였으나 Distributor에서는 원래 판매 금액으로 세금 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였습니다. 당사에서는 무상으로 제공하였기에 Distributor가 납부한 관세 부분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무상으로 공급되는 제품이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해당 제품의 일반적인 가격에 근거하여 브라질 세무 당국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브라질 연방 세무국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미 작년에 원래 판매 금액으로 세금 신고가 진행돼 세금이 납부된 경우 브라질 세무 당국에 건의하여 승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법인 청산에 따른 세무

**(법인 청산에 따른 세무)** 안녕하세요. 현재 브라질에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자회사를 청산하고자 합니다. 어떤 과정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브라질 정부의 관료주의적 행정으로 인해 법인을 청산하는 과정에도 여러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사업 정리 시 회사에 잔여 부채가 없다면 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30~120일이 걸립니다.

청산을 위해서는 우선 연방 국세청(Receita Federal)을 통해 체납된 세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체납 문제가 없으면 법인 납세 번호(CNPJ-Cadastro Nacional de Pessoa Jurídica) 등록을 폐지해야 합니다. 그다음 연방 국세청에 법인 소득세 납부 증명서와 법인 등록증(Ficha Cadastral de Pessoa Juridical)을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주(州) 재무국에서는 법인의 주 등록 폐지 신청(Declaração Cadastal parao Cancelamento da Inscrição Estadual)을 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사회보장국(INSS - Instituto Nacional do Seguro Social)에서 복지금 완납 증명서(CND - Certidão Negativa de Débito do INSS), 연방 금고 은행(CEF - Caixa Econômica Federal)에서는 퇴직 기금(FGTS) 완납 증명서(CRF-Certificado de Regularidade do FGTS)를 받아야 합니다. 상기 서류가 모두 준비되면 이제 회사 등록을 폐지해야 하는데 등록 기관에 따라 민사 등기소(Cartório de Registro Civil de Pessoas Juridicas) 또는 상업 등기소(Junta Comercial)에서 회사 등록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인(Sociedade)의 경우는 변호사가 작성한 회사 정관 해지서(Distrato Social)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의 절차가 완료되면 회사의 법적 정리는 완료되나, 회사 관련 서류는 청산 후 최소 5년간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2. 노무

### ✓ 채용 공고

**(채용 공고)** 저희는 상파울루에 소재한 법인으로, 영업 직무를 수행할 현지인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영업에 대한 경력이 있으면 더 좋으나 경력이 없더라도 태도가 좋은 인력이면 선발해서 잘 양성하고 싶습니다. 현재 상파울루 내 양질의 인력을 소싱할 수 있는 서치펌 또는 현지 채용 포털, 현지 커뮤니티 등 컨택 포인트가 구비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채용 소싱 채널이 빈약한 상황인지라 KOTRA 상파울루 무역관에 자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저희 무역관의 경우, 여러 채널을 동원하여 인력을 채용합니다. Catho와 같은 구인/구직 사이트에 구인 공고를 내고 이력서를 받아 면접을 보고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과거에는 주요 대학 게시판에도 구인 공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한국계 인력이 필요한 경우 Bom Dia나 Brazil Today 등과 같은 현지 한인 언론에 구인 광고를 내기도 합니다.

CATHO: [www.catho.com.br](http://www.catho.com.br)

Hanintoday: <http://www.hanintoday.com.br/zbxe/index.php>

Bom dia: <https://bomdianews.com.br/>

## ✓ 폐업 시 퇴직금

**(폐업 시 퇴직금)** 브라질에 공장을 운영 중인 제조업체입니다. 브라질 공장을 철수하는 시점에 근로자 해고(대량 해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근로자에게 보상해야 할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브라질 노동법에 따르면 해고 근로자에 대해서는 잔여 급여 지급 - 13번째 월급 - 유급 휴가비 - 유급 휴가 대비 1/3의 추가금 - 고용 기간에 적합한 FGTS 총액의 40%에 해당하는 벌금 및 FGTS 인출 허가라고 나와 있는데 월 급여 200만 원의 근로자가 1년간 근무했을 때를 예로 들어서 지급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문의와 같이 매월 200만 원을 받는 월급 근로자를 해고했을 경우 예상되는 대략적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해고 근로자에 대해서는 잔여 급여 지급은 해고 날짜 기준으로 계산
  - 13번째 월급: 200만 원
  - 유급 휴가비 + 유급 휴가비의 1/3의 추가금: 200만 원 + 66만 원 = 266만 원
  - 고용 기간에 적합한 FGTS 총액의 40%에 해당하는 벌금: 76만 8000원
- 1년간 적합한 FGTS 총액: (200만 원 X 8%) X 12개월 = 16만 원 X 12 = 192만 원. 192만 원의 40% = 76만 8000원

따라서 200만 원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1년 근무하고 휴가비나 13번째 월급을 모두 수령하지 않았을 경우, 542만 8000원(200 + 266 + 76만 8000원)에다 잔여 급여를 더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기와 같이 저희가 근로자 해고 시에 발생 비용을 대략적으로 안내해 드렸으나, 근로자의 휴가 사용 유무(일부만 사용

했을 경우 남은 휴가만 계산), 13번째 월급을 받았는지, 합의 해고(일방적인 해고 통보가 아닌 노사 합의 해고 시에는 FGTS 벌금 20%만 부과) 등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마다 해고 비용이 다르게 책정될 수 있으니 반드시 회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폐업 시 퇴직금)** 1. 브라질 법인 회사 철수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① 인사, 노무 관련 ② 세금 관련 ③ 브라질 진출 기업의 폐업 사례, 폐업 원인 및 폐업 결과 등에 대해 저희가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을 시 회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 ① 브라질 법인 회사 철수 시, 인사, 노무 관련 직원 해고를 위해서는 월급 및 휴가비, 근속 연수 보상금(FGTS), 사회 복지 부담금(INSS) 등을 납부해야 하는데, 특히 FGTS와 INSS는 완납했다는 증명이 있어야 철수가 가능합니다.
- ② 세금 관련 해외 거주자가 브라질에 대한 투자를 매각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에 등록된 외국인 투자 금액에 대한 액수까지는 면세되며,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자본 이득(Capital Gain)으로 간주돼 15%의 원천 소득세가 징수됩니다.
- ③ 과거에 브라질에 진출했던 한 화장품 업체는 ANVISA(위생감시국) 등록 취득에 시간이 너무 걸리는 바람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철수하였으며, 브라질 경제 위기 때 회사 사정이 어려워진 몇몇 업체가 훗날 재진출을 기약하면서 철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무 시간)**

- ① 브라질 근로 시간은 휴게 시간을 포함해 일 8시간, 주 44시간 이하로 알고 있고 토/일요일이 휴일로 알고 있는데 월~금까지 8시간씩 근로 시 주 40시간인데 4시간은 어떻게 산정된 시간인지 궁금합니다.
- ② 교대 근무자의 근로 시간은 일 최대 6시간, 주 36시간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교대 근무자가 이 규정을 적용받는지요? 현지에서는 교대 근무자들도 일 8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③ 하루에 연장 근로 가능 시간이 2시간인지, 4시간인지 궁금합니다. (어느 블로그에서 2017년에 노동법이 개정되어 일 최대 4시간까지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 ④ 브라질도 한국 기업처럼 취업 규칙을 작성해서 정부기관에 신고해야 되는지요? (한국의 경우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은 취업 규칙 작성 후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 ⑤ 브라질은 주휴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은 소정 근로 일수를 개근 시 1주에 평균 1일의 유급 휴일(주휴일)을 부여합니다.)
- ⑥ 브라질 법정 휴일이 궁금합니다. (한국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법정 휴일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브라질 현지 노무 관리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① 주당 최대 4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4시간을 월-금으로 나누어도 되고 토요일에 한꺼번에 4시간을 근무해도 됩니다. ② 경비와 같은 교대 근무자의 근로 시간은 일 최대 6시간, 주 36시간 이하로 정해져 있으나, 이 원칙이 모든 교대 업무에 적용되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③ 연장 근로 가

능한 시간은 2시간입니다. ④ 브라질에는 취업 규칙을 작성해서 정부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⑤ 브라질에서도 1주에 1일 유급 휴일을 부여합니다. ⑥ 브라질의 경우, 1월 1일, 4월 21일, 5월 1일, 9월 7일, 11월 2일, 11월 15일, 12월 25일 등이 대통령령 10,607호에 의거한 법정 휴일입니다.

**(근무 시간)** 브라질 기업들은 ‘Banco de Horas’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Banco de Horas’는 초과 근무 시간 기록 제도로 기본 근무 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경우 초과된 시간을 적립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Banco de Horas’ 제도 도입 이전의 경우, 초과 근무는 일일 최대 2시간까지 허용되어 있으며 시간당 급여의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초과 시간에 대한 보상은 노조 합의에 따라 직원 전체에 일괄 적용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한 보상(휴가)이 6개월 내에 이루어지는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 간 개별 협상으로 가능하며 6개월~1년(최대 한계) 내에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노조가 반드시 협상에 참여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와 개별 협상을 통해 상호 유리한 방법으로 추가 근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해졌으며 근로자는 협상을 통해 희망하는 날짜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노무 소송)** 노무 소송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지요?

**(답변)** 각 지역별 노동법원에서 노무 소송 내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도 특별한 제약 없이 노동법원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현재

는 ID와 비밀번호를 가진 변호사만이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세한 소송 내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에는 24개 지방 노동법원이 있는데 대부분 주도(主都)에 위치합니다. 상파울루주에는 상파울루시와 캄베나시 2곳에 노동법원이 있습니다. 상파울루시 노동법원은 제2지역(TRT2)으로 구분되며, 사이트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파울루시 노동법원: <https://ww2.trt2.jus.br/>

**(노무 소송)** 대략적인 노무 소송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답변)** 노무 소송 기간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괄적으로 안내 드리기 어렵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만나 바로 합의를 하는 경우 수개월 내에 소송이 끝날 수 있으나, 소송 내용이 복잡하고 여러 변수가 있는 경우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휴가)** 새로 입사한 직원은 언제부터 휴가를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무단 결근이 잦은 직원의 경우 휴가 일수가 줄어드는지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입사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직원에게는 휴가를 갈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직원은 휴가 권리가 주어진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은 경우 휴가 기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브라질 노동법(CLT)이 규정하는 무단 결근으로 인한 휴가 일수 감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0~5번 무단 결근: 휴가 일수 감소 없음 (30일 휴가)  
 6~14번 무단 결근: 휴가 일수 6일 감소 (24일 휴가)  
 15~23번 무단 결근: 휴가 일수 12일 감소 (18일 휴가)  
 24~32번 무단 결근: 휴가 일수 18일 감소 (12일 휴가)

\* 근거: 노동법(CLT) 130항

**(휴가)** ① 휴가 비용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② 휴가비 지급은 언제 해야 되는지, ③ 휴가 날짜는 누가(직원 또는 고용주) 정하는지 등 직원 휴가에 관한 기본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④ 또한 “직원이 30일 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일부를 반납하는 경우,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해주어야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30일 휴가를 모두 사용하도록 해야 하는지 ⑤ 직원이 휴가를 제때에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 (답변)

- ① 브라질 노동법에 따르면 휴가비는 1개월 치 급여와 급여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일례로 3,000헤알의 월급을 받는 직원의 휴가비는 3,000헤알에 1,000헤알을 더한 4,000헤알이 됩니다.
- ② 휴가비는 노동법 145항에 따라 휴가 시작일로부터 2일 전에 지급해야 합니다.
- ③ 브라질 노동법상 고용주가 자유롭게 직원의 휴가 시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주는 최소 30일 전에 미리 통보하여 직원이 자신의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휴가를 가려는 직원과 고용주, 소속 부서의 상사 등과 협의하여 휴가 일정을 결정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12개월이 지나면 휴가를 갈 수 있습니다. 일례로 6월 1일에

입사한 직원은 다음 해 6월 1일부터 휴가를 갈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며, 이후에는 매년 6월 1일 ~ 다음 해 5월 31일 사이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④ 노동법에 따라 휴가 일수의 최대 1/3까지 반납이 가능합니다. 즉 3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직원은 휴가의 20일만 사용하고 10일은 반납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직원에게 10일에 해당하는 금전적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 ⑤ 일례로 2018년 6월 1일에 입사한 직원은 2019년 6월 1일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해당 직원이 2020년 5월 31일까지도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채 두 번째 휴가 시기가 온 경우 고용주는 휴가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원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직원이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회사)** 퇴사 비용 지급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퇴사 비용을 적시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벌금을 내게 되는지요?

**(답변)** 2017년 개정된 노동법에 따라 고용주는 반드시 직원 퇴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퇴사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직원 퇴사 비용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1개월 치 월급에 준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근거 법령: 노동법(CLT) 477항 §6°와 §8°

**(월급)** 브라질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직원 채용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많아 귀 무역관에 문의 드립니다.

① 직원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기간은 어떻게 정하는지요?

② 혹시 직원들의 급여 지급이 늦어졌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하나요?

**(답변)**

- ① 직원 급여는 해당 월이 마감한 날로부터 5일(영업일 기준, 이 경우 토요일도 영업일로 간주함)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일례로 7월 급여는 8월 5일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일요일이 있을 경우 8월 6일까지 지급해도 됩니다. 매주 또는 매 15일마다 월급을 계산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당 기간 만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은 수표, 은행 입금 등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② 급여가 3개월 이상 밀리게 되면 직원들은 고용주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임금 체불’을 ‘강제 해고’로 간주하고 이에 따라 고용주는 직원에게 ‘강제 해고’ 시 발생하는 벌금과 기타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강제 해고 시에는 직원이 근무 기간 동안 적립한 FGTS(근속 연수 보상 기금)의 40%에 해당하는 벌금을 직원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월급)** 저는 브라질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용주가 저의 업무를 줄이고 월급을 감봉한 후 자진 퇴사를 종용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이 경우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월급 감봉 및 자진 퇴사 종용 등을 ‘부당 해고’ 행위로 인정하며 이에 따라 고용주는 ‘강제 해고’ 시 발생하는 벌금(근무 기간 동안 적립한 FGTS(근속 연수 보상 기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과 기타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소송을 제기할 경우 부당한 해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 브라질 업체들의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일일 최대 근무 시간은 몇 시간까지 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브라질 노동법은 하루 최대 8시간, 주 4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정 근무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근무 수당(Hora Extra)을 지급해야 합니다.

**(Hora Extra)** 브라질에 진출한 한국 기업입니다. 추가 근무 수당(Hora extra) 관련 문의 드립니다. 모든 직원이 추가 근무 수당 지급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추가 근무 수당(Hora Extra) 지급은 모든 직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무실 내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법정 근무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Hora Extra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사무실 외부에서 근무하는 인력 및 간부 직원은 추가 근무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휴식)** ① 퇴근 후 다음 근무까지 법정 휴식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② 또한 고용주가 반드시 1시간의 점심시간을 직원에게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① 노동법에 따라 근로자는 최소 11시간의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일례로 오후 9시에 퇴근한 근로자는 최소 11시간을 쉴 권리가 있기 때문에 다음 날 오전 8시 이후에 출근해야 합니다.

- ② 하루 6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최소 1시간의 점심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용주와 직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점심시간을 최대 30분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하루 근무 시간이 4시간 초과 6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5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직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임신부의 고용 안정성)

- ① 노동법에 따라 임신한 직원은 해고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② 만일 고용주가 임신 사실을 모른 채 직원을 해고했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요?

### (답변)

- ① 임신한 직원의 경우, 임신이 확인된 시점부터 출산 후 5개월까지 해고할 수 없습니다. 노동법에 따라 임신부의 '고용 안정성'이 출산 후 5개월까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직원이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는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임신 중이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 ② 임신 사실을 모른 채 직원을 해고했을 경우 해당 직원을 다시 복직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복직을 거부하는 직원에게는 임신일로부터 출산 후 5개월까지 직원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월급, 보너스(13번째 월급, 출산 휴가 등))와 강제 해고에 대한 벌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간혹 해당 직원이 복직과 회사의 보상 모두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직원이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수습사원, 임시직 사원, 계약직 사원도 임신이 확인된 시점부터 출산 후 5개월까지 해고할 수 없습니다.

**(무단 결근)** ① 저희 회사 직원이 무단 결근을 자주 하는데, 정당한 사유로 해고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② 만일 직원의 무단 결근이 장기간 지속되고 연락도 되지 않는 경우, 해고 비용 등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답변)**

- ① 무단 결근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직원의 무단 결근이 30일 이상 지속돼야 하며 둘째, 고용주는 직원에게 일정 기한 내에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청하는 통보를 보내야 합니다. 통보는 수신 확인이 가능한 등기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 복귀 명령 기한이 지나고 30일 이상 무단 결근을 지속하는 경우 직원을 정당하게 해고할 수 있습니다.
- ② 직원과의 연락이 두절된 경우 일단 노동 전문 변호사를 통해 무단 결근 직원에 대한 해고 비용 정산 의지를 밝히고 법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직원과 연락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고 비용은 일단 법원에 납부해야 합니다. 해고 후 일정 기간 내에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체납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같은 선제적 조치로 인해 고용주는 추가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야간 근무)** 저희 업체는 업무 특성상 야간 근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① 야간 근무는 구체적으로 어느 시간대의 근무를 의미하며, 야간 근무 수당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요?
- ② 또한 야근 수당을 받던 근로자가 주간 근무를 하게 될 경우, 기존의 야근 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① 노동법 73항에 따라 도시 지역 근무자의 경우 밤 10시부터 익일 새벽 5시까지를 야간 근무로 정의합니다. 야간 근무 시에는 야근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주간 근무 시에 적용되는 시급의 최소 20%를 야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② 야간 근무자가 주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야근 수당은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근무 환경)**

- ① ‘건강에 해로운 환경’과 ‘위험에 처할 수 있는 환경’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 ②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 두 가지 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지요?

**(답변)**

- ① ‘건강에 해로운 환경’은 근로자의 건강을 조금씩 악화시켜 사망까지도 이르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지나친 소음이나 먼지가 많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병자와 잦은 접촉을 해야 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건강에 해로운 환경에 대한 설명은 노동복지부 규정 NR 15에 상세히 기재돼 있습니다. ‘위험에 처할 수 있는 환경’은 화약, 폭발물, 전기 등과 같은 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있어 사고 발생 시 근로자가 즉시 사망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 NR 15**

<https://www.gov.br/trabalho-e-previdencia/pt-br/composicao/orgaos-especificos/secretaria-de-trabalho/inspecao/seguranca-e-saude-no-trabalho/normas-regulamentadoras/nr-15.pdf>

② 건강에 해롭거나 위험에 처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일하는 경우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근로자로 하여금 건강 수당과 위험 수당 중 하나만을 선택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법정 소송을 통해 두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입증할 경우 2개의 수당을 모두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무 환경)** 노동복지부 규정 NR 15에 명시돼 있는 '건강을 해칠 수 있는 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 추가 수당을 어떻게 책정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환경은 위험도에 따라 상, 중, 하 3가지로 구분됩니다.

\* 2021년 9월 기준 최저 임금: 1,100헤알

- 위험도 하: 최저 임금의 10%
- 위험도 중: 최저 임금의 20%
- 위험도 상: 최저 임금의 40%

**(근무 환경)** '위험에 처할 수 있는 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 추가 수당은 어떻게 책정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화약, 폭발물, 전기 등과 같은 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있어 사고 발생 시 근로자가 사망할 수 있는 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 노동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 기본 급여(Salario Base)의 30%에 해당되는 금액을 위험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위험에 처할 수 있는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지 않는 경우(위험한 업무를 가끔 수행하는 경우)에는 위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동 수첩)** 저희는 브라질에 진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회사입니다. 노동 수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고용주는 반드시 노동 수첩에 사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요?

**(답변)** 고용주는 반드시 직원 채용 후 5일 내에 노동 수첩에 사인을 해야 합니다. 법정 기한 내에 고용주가 노동 수첩에 사인을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고용주는 직원의 노동 수첩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없으며 사인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직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전근)** 고용주는 직원 동의 없이도 다른 지역으로 전근 발령을 낼 수 있는지요?

**(답변)** 브라질 노동법에 따르면 동일한 도시 내에 위치한 다른 지점에서의 근무(현재 거주지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경우)는 '전근'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전근 발령 받은 지역으로 이사해야 하는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 동의 없이 전근을 명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간부직의 경우와 현재 근무하는 사무실이 폐쇄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전근 명령이 가능합니다. 이때 직원의 전근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회사가 책임져야 하며, 전근자에게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직원의 권리)** 직원 전체 월급이 인상된 경우, 휴직 중인 직원에게도 월급 인상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직원 전체의 월급이 인상되는 경우 휴직 중인 직원에게도 월급 인상이 적

용됩니다. 월급 인상은 물론 휴직 기간 중 회사가 해당 직원의 소속 부서에 부여한 모든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직원의 권리)** 본인의 결혼으로 결근하는 경우, 월급에 피해를 받지 않는지요?

**(답변)** 월급제 직원이 결근하면 통상적으로 그날의 임금을 제외한 월급을 지급합니다. 다만 결혼식의 경우는 3일까지 정당한 결근으로 인정되어 월급 감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직원의 권리)** 법원 출두 명령을 받은 직원이 조퇴나 결근을 할 경우, 월급에 피해를 받지 않는지요?

**(답변)** 법원 출두 명령을 받은 직원이 조퇴나 결근을 할 경우 월급에 전혀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단, 반드시 법원 출석 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직원의 권리)** 현혈은 정당한 결근 사유가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브라질 노동법은 현혈한 직원의 결근(1일)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 현혈로 인한 결근은 연간 1회만 가능하며, 반드시 현혈 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결근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 만취 상태로 출근한 직원을 정당한 사유로 해고시킬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만취 상태로 출근한 사안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이 같은 사례가 단 한 번 있더라도 해고 사유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알코올 중독 관련 노동 분쟁에서 직원 해고보다는 치료를 명령하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 3. 인증

#### ✓ INMETRO

**(INMETRO)** 안녕하세요? 저희는 젓병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브라질 바이어에게 INMETRO 인증을 받았느냐고 문의를 받았는데 INMETRO 인증은 무엇이며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또 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지 간략하게라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INMETRO는 각종 산업 제품의 규격 및 품질에 관한 검사를 실시해 위반 여부를 가려내고 인증을 발급해주는 기관입니다. 실제로 제품 인증의 발급은 INMETRO가 허가한 인증서 발급 대행 업체(OCP)가 수행하고, INMETRO는 인증 허가 및 관리 감독을 담당합니다.

#### ○ INMETRO 공식 제품 인증 대행업체

##### **(OCP: Organismo de Certificação de Produtos)**

[http://www.inmetro.gov.br/organismos/resultado\\_consulta.asp](http://www.inmetro.gov.br/organismos/resultado_consulta.asp)

INMETRO 인증은 강제 인증과 자발적 인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인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제품은 대부분 강제 인증 대상입니다. 상파울루 무역관으로 연락주시면 INMETRO 인증 가이드북 파일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2018년에 발간한 자료이기 때문에 강제 인증 품목과 대략적인 비용 등에 대한 업데이트가 필요하나 INMETRO 인증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NMETRO)** INMETRO 강제 인증 대상 품목은 어떤 것이며 어디에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답변)** 2021년 8월 4일 기준 153개 품목이 강제 인증 대상이며, 품목명 옆에 있는 ‘Lista de Produtos’ 버튼을 눌러 상세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강제 인증 품목 리스트

<http://www.inmetro.gov.br/qualidade/rtepac/compulsorios.asp>

## ✓ ANVISA

**(ANVISA)** 브라질로 의료 기기를 수출하려고 하는데, 비독점 업체 2곳과 거래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2곳에서 모두 같은 제품 1개를 등록하고 수입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한곳에서 제품을 등록하면 다른 곳에서는 더 이상 등록이 안 되는지요?

**(답변)** 브라질에서 의료 기기를 유통하기 위해서는 ANVISA 인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일 제품을 여러 업체가 수입하여 각각 다른 브랜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ANVISA)** MA Holder가 될 수 있는 요건을 문의 드렸는데, 영업 허가(AFE)를 보유한 브라질 현지 법인만이 ANVISA 인증을 취득하여 MA Holder가 될 수 있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현재 당사는 상파울루에 다른 업종 판매 법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법인이 의약품 MA Holder가 되기 위하여 의약품 업종 추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아래 사항을 질문 드립니다.

① 당사의 브라질 현지 법인이 '외국 자본'이라는 점에서 의약품 유통 허가에 지장이 있지는 않은지, ② 타 제품군을 판매하고 있는 법인이 의약품 유통 업종을 추가한다면 새로운 업체로서 영업 허가 받는 것과 절차 혹은 난이도에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브라질 정부는 외국 기업이 설립한 현지 법인을 국내 자본으로 설립한 기업에 비교해서 차별을 두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외국 자본으로 설립한 현지 법인이 의약품 유통 허가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향후 귀사에서 유통하고자 하는 의약품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허가 과정이 차이가 날 수 있으니 ANVISA 인증 전문 대행 업체를 접촉해 허가 과정에 관한 팁이나 기타 유용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증 대행 업체는 '카테고리별 전문가 및 컨설팅 업체 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VISA)** 안녕하세요. 의료 기기를 생산하고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저희는 바늘 없는 분사식 주사기를 생산하여 현재 브라질 업체와 독점 계약 후 ANVISA에 정식 등록하여 2017년부터 수출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사 제품은 기구부(injector)와 소모품(Disposables) 7종이 하나의 Starter Pack 세트로 구성되어 납품되는데, 일부 기구의 오작동으로 정황상 리콜이 어려워 이번 신규 오더에 해당 injector 개수만큼만 보상 지원을 결정하였습니다.(Starter pack 전체 구성품이 아니라 오류가 난 injector만 보상) 12월 신규 오더에 대한 PI에 해당 injector 보상 부분을 기재하여 confirm을 받은 후 생산이 거의 완료된 시점에서 어제 위 파트너로부터 현재 7종이 모두 포함된 Starter pack 세트로 ANVISA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injector만 통관이 되지 않고 Starter pack 전체를 구성해서 보상해 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초음파 기기에서 리더기 부품에 이상이 생기면 해당 부품만 지

원을 하듯, 저희 구성품 중 한 제품이 지난 수출 물량의 30%에서 오류가 있다 하여 조건 없이 보상을 해주려고 하는데, 다른 하자 없는 부품까지 제공하지 않으면 통관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이전에도 있었는지, 원활한 해결책이 있을지 여쭙고자 합니다.

**(답변)** 브라질 통관 시스템은 매우 복잡하고 경직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통관에 ANVISA 등과 같은 인증이 필요한 제품은 더욱 까다롭습니다. “세트 제품으로 ANVISA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제품으로는 통관이 어렵다”는 브라질 바이어 주장은 안타깝지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세트를 구성하는 날개 제품 하나 하나가 별도 ANVISA 등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이상, 부분적으로 통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자가 발생한 제품 전체를 세트 상태로 반송하여 새로 세트를 구성하여 보내는 것이 문제 해결 방안일 수도 있으나, 정확한 솔루션은 통관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통관 업체는 ‘카테고리별 전문가 및 컨설팅 업체 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VISA)** 안녕하세요. 브라질 화장품 수출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 제품은 선크림, 주름 개선 마스크팩, 기초 크림 제품을 판매 예정이며 Produtos Cosméticos Grau 2에 해당됩니다.

ⓐ 이전 문의 시 ANVISA 취득까지 대략 3~6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  
다. 기간 외에 비용과 절차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NVISA 등록 시 브라질 현지 바이어 혹은 대리인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필수 사항인가요?

- ③ 만약 **Produtos Cosméticos Grau 1**에 해당되는 제품을 판매하게 된다면 별도의 등록 없이 바이어를 통해 바로 판매가 가능한가요?
- ④ 인체에 해를 입힐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 **GMP**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ANVISA** 신청 시 **GMP** 현장 심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① Grau 2에 속하는 화장품의 등록은 제품에 따라 직접 비용(등록에 필요한 각종 수수료 등)이 2~3000달러에서 10,000달러가 넘을 수도 있고, 컨설팅 비용 등 간접 비용이 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증 절차는 품목에 따라 다소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체로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① **ANVISA** 시스템 등록(**BRH(Brazilian Registration** 심사 및 인증 발급
- ② 직접 현지 법인 설립을 하지 않는 이상 현지 대리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 ③ Grau 1에 해당하는 제품이라도 약식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약식 등록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15일 ~ 한 달 이내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④ Grau 3이나 4 또는 5로 분류되는 제품은 모두 **GMP**를 받아야 합니다. **ANVISA** 신청 시에 **GMP**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VISA)** 안녕하세요. 마스크팩을 브라질에 수출하려고 합니다. 고객의 요구로 HS CODE는 3304.99가 아닌 3005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통관을 할 때 피부 임상 시험 결과지가 필요하다고 하시는데요, 미국 FDA로 대체가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브라질에서는 해외에서 취득한 어떤 인증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브라질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위생 감시국(ANVISA) 인증을 받아야 하며, FDA로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나중에 제품 홍보 시에는 미국 인증을 받은 사실이 품질 보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ANVISA 인증에 대한 정보는 품목별로 매우 상이하고 전문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답변 드리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ANVISA 인증 전문가와 직접 접촉하셔서 귀사 제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드린 후 인증 취득 및 수입 관련 부분을 문의하시는 것입니다.

\* 인증 대행 업체는 '카테고리별 전문가 및 컨설팅 업체 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VISA)** 이번에 저희가 계약할 업체에서 의료 기기 수입자 등록을 위한 ANVISA 진행을 시작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진행에 드는 모든 비용은 수입자 측에서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인증이 완료되면 CERTI를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요, 위의 업체를 A라고 한다면, A 업체에서 ANVISA를 등록하였을 때 저희 쪽에서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아래 나열해 보았습니다.

- ① ANVISA가 종료되는 만기일이 있는지?
- ② A가 ANVISA를 등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2년 동안 수출 실적이 좋지 않아 다른 B 업체로 거래를 돌리고 싶을 경우, 이때 우리가 A 업체에 거래 취소 통보를 할 수 있는 입장인지?
- ③ ANVISA 종료 기간 존재 유무를 떠나서, ANVISA를 획득한 A 업체와 거래를 끊고 B 업체와 새 계약을 맺고 싶다면, B 업체는 새로 ANVISA 등록을 진행해야 하는지?
- ④ 혹은 A가 B에게 일정한 금액을 받고 등록 권한을 넘길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 ANVISA의 유효 기간은 5년이며 만기가 되면 갱신이 필요합니다. ㉡ 기존 A업체에서 B업체로 거래선을 바꿔도 무방합니다. ㉢ ANVISA를 획득한 A 업체와 거래를 끊고 B 업체와 새 계약을 체결할 경우 B 업체는 새로 ANVISA를 취득해야 합니다. ㉣ ANVISA 인증transfer 가능합니다. 다만 B 유통사가 A와 같은 수준의 생산 조건과 능력을 갖추고 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ANVISA 갱신)

Q: 화장품 제품에 대한 ANVISA 인증 Class 2를 취득하였습니다. 당시 ANVISA 유효 기간이 5년으로 알고 있고, 만료 6개월 전에 갱신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 지금 만료가 3개월 남은 시점에 갱신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 추가로 갱신을 할 때 발생하는 대략적인 비용도 알고 싶습니다.
- ㉢ 당시 브라질 현지 업체 N사와 등록을 진행했는데, 갱신을 하면서 업체를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2019년 10월 발표된 ANVISA 법령 RDC 312호와 313호에 따라 2020년 1월 14일부로 class 2에 속하는 개인 위생 용품, 화장품, 향수, 위생용 세제 등의 ANVISA 등록 유효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동 개정안에 따라, 기존에 취득한 ANVISA 등록의 유효 기간도 취득일로부터 10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귀사의 경우, 2015년에 ANVISA를 취득했으니, 2025년까지 유효 기간이 연장된 것입니다. 다만 ANVISA에 특별한 의사 표시 없이도 귀사 제품의 유효 기간이 자동 연장되는지의 여부를 ANVISA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갱신 비용 및 절차는 품목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ANVISA 인증 대행 업체를 통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㉓ 업체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 등록의 갱신은 불가하며, 새로운 업체는 ANVISA를 별도 취득해야 합니다.

**(ANVISA 화장품)** 저희 제품은 화장품이며, 2014년에 Class 2로 ANVISA를 취득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ANVISA를 받은 제품은 제대로 수출이 진행되지 않았고, 최근에 새롭게 브랜딩하여 다시 브라질 시장에 판매하고자 합니다.(비슷한 품목이지만, 다른 제품) 새로운 제품 판매에 대해서 하기 내용 문의 드립니다. ANVISA 취득 까지 걸리는 기간과 비용, 현지 유통 업체의 독점 가능성(현지 업체가 있는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혹시 해당 업체가 등록을 진행할 경우 수입에 대한 독점권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답변)** 제품에 따라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이 달라집니다. 화장품의 경우 특별한 사용 설명서가 없어도 되고 기본 성분으로 구성된 제품은 1등급으로 분류되고, 기능성 화장품으로서 안정성과 효능 입증에 필요한 성분이 들어 있는 제품은 2등급으로 분류됩니다. 1등급의 경우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1개월, 2등급은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증 비용은 인증 신청 업체의 매출 규모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적게는 수백 헤알에서 수만 헤알까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지 업체가 귀사 제품에 대한 ANVISA 등록을 보유하는 경우 수입에 대한 독점권이 발생합니다. 단 귀사에서 B 업체와 계약하여 별도로 ANVISA를 취득하는 경우, A, B 업체 모두 귀사 제품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ANVISA / INMETRO)** 현재 브라질에 대리점을 통해 메디컬/영양 시장에 체성분 분석기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피트니스 시장도 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피트니스 시장에 판매 시 의료 기기 인증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체성분 분석기가 브라질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ANVISA(위생 감시국)와 INMETRO(품질 관리원)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ANVISA는 의료 기기 뿐 아니라 인체에 위험하거나 해가 될 수 있는 요소를 지닌 제품(화장품, 식품 등)이면 어떤 것이라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인증입니다. 따라서 체성분 분석기를 브라질 시장에 판매할 경우, 판매처가 의료 시장이든 피트니스 시장이든 관계없이 ANVISA 인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기·전자제품의 경우는 INMETRO 인증도 요구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사 제품이 브라질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취득해야 하는 인증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 인증 대행 업체는 '카테고리별 전문가 및 컨설팅 업체 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VISA / INMETRO)** 저희 회사는 현재 국내에서 피부 미용 기기로 KC 자율 인증을 받은 제품을 생산 중에 있습니다. 국내 HS CODE는 8543.70-2020(피부 개선 목적의 가정용 미용 기기)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국내에 미용 기기로 허가받은 제품이 브라질에서도 공산품으로 판매 가능한지,
- ② 공산품으로 브라질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인증이 필요한지(AC 전원 사용 시, DC 전원 사용 시)
- ③ 인증에 필요한 소요 시간
- ④ 공산품으로 판매가 가능할 경우 수출 시 유의하여야 하는 사항

⑤ 공산품 중에서도 미용 기기로 판매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답변)**

- ① 귀사의 제품은 미용 기기이나 전기로 가동되는 제품이어서 공산품으로 브라질 시장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인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② 미용용 전기 제품의 대부분은 INMETRO(국가계량품질기술원)의 인증이 요구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ANVISA(국가위생감시국)의 인증 취득도 필요합니다. 정확한 사항은 전문가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 ③ 제품에 따라 다르나 INMETRO 인증 취득에는 대략 3개월 ~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ANVISA는 6개월 ~ 1년 정도 소요되며 현장 실사가 필요한 경우 1년 이상 걸립니다.
- ④ INMETRO 또는 ANVISA 강제 인증 대상 품목일 경우, 인증을 먼저 취득해야 수출 통관 및 판매 유통이 가능합니다.
- ⑤ 귀사 제품은 전기 없이 작동이 가능한 간단한 ‘미용 기기’라기보다는 일반 기계로 보이는 바, 인증 취득 없이는 수출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인증 전문가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인증 대행 업체는 '카테고리별 전문가 및 컨설팅 업체 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VISA/INMETRO)** 안녕하십니까, 브라질에 자사 제품을 수출하고자 IVD 인허가 정보 요청드립니다. 저희가 제조하고 있는 제품은 혈당 측정기, HbA1c(당화 혈색소) 측정기, 콜레스테롤 측정기입니다. 아래의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 ① 브라질의 경우 ANVISA와 INMETRO 두 가지를 모두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각각 소요되는 시간 안내 부탁드립니다. (특히, ANVISA나 INMETRO 인증 과정 중 어떤 부분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EX) 임상 실험, 공장 실사)
- ② ANVISA와 INMETRO 취득 시 한국 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 지연되는 포인트
- ③ 해당 제품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 목록(ANVISA/ INMETRO 각각)
- ④ 해당 제품 인허가에 필요한 비용(ANVISA/INMETRO 각각)
- ⑤ 한 품목에 대하여 다수 대리인 지정 가능 여부
- ⑥ 제품 등록 시 인접 국가 제품 수출/판매 가능 여부
- ⑦ 남미 지역 효율적인 진출 순서(TIP)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 ① 모든 의료 기기가 ANVISA와 INMETRO 두 개의 인증을 모두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ANVISA는 모든 의료 기기에 공통적으로 요구되지만 INMETRO는 주로 전기를 사용하는 의료 기기에 요구됩니다. ANVISA의 경우 제품에 따라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이 매우 다른데, 적게는 수개월에서 2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ANVISA 인증 취득에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단계는 현장 실사입니다. ANVISA 검사관이 현지까지 직접 출장을 나가 확인하는데, 검사관이 많지 않아 대기 줄이 긴 편입니다. 한편 INMETRO는 특별히 까다로운 제품이 아닌 이상 2개월 ~ 6개월 정도면 인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 ② 신속한 인증 취득을 위해서는 꼼꼼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서류 미비로 인증 발급이 한 번 거부되면 인증 취득 절차가 필요 이상으로 지연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반드시 인증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③ 등록에 필요한 서류가 제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④ 인증 취득 비용 역시 제품마다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 ⑤ 한 품목에 대하여 다수의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각각의 대리인이 ANVISA를 별도로 취득해야 합니다.
- ⑥ ANVISA나 INMETRO를 보유하고 있어도 인접 국가 제품 수출/판매가 바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수출 국가별로 요구하는 인증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단 ANVISA나 INMETRO 인증을 보유하는 것이 품질 보증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⑦ 남미 지역에서 가장 큰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브라질입니다. 대부분의 업체가 브라질을 생산이나 수출 거점으로 하여 인근 국가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NVISA)** 브라질 유통사 A와 더말 필러(의료용 기기), 화장품 유통 계약을 진행하고 있어서 ANVISA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① 브라질 유통사 A가 당사 더말 필러 또는 화장품 제품을 ANVISA 등록을 하고, 만약에 차후에 유통 계약이 종료될 경우, 그 제품의 ANVISA 인증을 다른 유통사 B로 이관할 수 있는지요? 안 된다면, 유통사 B가 처음부터 다시 ANVISA 등록 진행을 해야 하는지요? 혹시 다시 등록할 경우 절차/시간/비용이 절감되는지요?
- ② 하나의 더말 필러 또는 화장품 제품을 브라질 유통사 A, B, C 등 여러 회사가 ANVISA 등록이 가능한가요?

**(답변)** ① A→B 유통사로 ANVISA 인증 이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B 유통사가 A와 같은 수준의 생산 캐퍼나 조건 등을 갖추고 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② 하나의 제품에 대해 여러 유통사의 ANVISA 등록이 가능합니다.

**(ANVISA 화장품)** 안녕하세요? 2015년 11월 30일에 자사에서 생산하는 화장품 제품 3개에 대한 ANVISA 인증 Class 2를 취득하였습니다. 당시 취득한 ANVISA 유효 기간이 5년이고, 만료 6개월 전에 갱신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 ① 지금 만료가 3개월 남은 시점에 갱신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② 추가로 갱신을 할 때 발생하는 대략적인 비용도 알고 싶습니다.
- ③ 당시 브라질 현지 업체 N사와 등록을 진행했는데, 갱신을 하면서 업체를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① 2019년 10월 발표된 ANVISA 법령 RDC 312호와 313호에 따라 2020년 1월 14일부로 class 2에 속하는 개인 위생 용품, 화장품, 향수, 위생용 세제 등의 ANVISA 등록 유효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습니다. 동 개정안에 따라, 기존에 취득한 ANVISA 등록의 유효 기간도 취득일로부터 10년으로 변경됐습니다. 귀사의 경우, 2015년에 ANVISA를 취득했으니, 2025년까지 유효 기간이 연장된 것입니다. 다만 ANVISA에 특별한 의사 표시 없이도 귀사 제품의 유효 기간이 자동 연장되는지의 여부를 ANVISA 전문가를 통해 확인 중이오니 답변을 받는 대로 바로 별도 메일로 회신 드리겠습니다.
- ② 갱신 비용 및 절차는 품목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ANVISA 인증 대행 업체를 통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③ ANVISA 갱신 시 업체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업체를 바꾸는 경우, ANVISA 등록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ANVISA 면제)** 브라질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의료 품목의 제조, 수입에 대한 예외 법령 적용으로 ISO 국제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인증 취득이 면제된다는 법령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는 Chest X-ray 영상 기반으로 확인할 수 있는 폐의 이상 소견을 검출하여 의사의 진단을 보조하는 Screening tool로서 국내 2등급 의료 기기 ‘의료영상검출보조소프트웨어’ 허가를 지난해 획득한 바 있습니다. 본 제품은 코로나 19 진단용 기기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전반적인 폐의 비정상 여부를 빠르게 Screening할 수 있으므로, 상용화 이후 코로나19의 빠른 선별 진료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코로나 19 관련 품목으로 마스크, 방호복, 호흡기 등을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ANVISA 인증을 취득한 유사 장비를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증 미보유 의료 장비에 대해서도 일부 인증 면제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폐사의 기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받고자 합니다.

**(답변)** 브라질 정부가 발표한 ANVISA 인증 한시 면제 대상은 방호복, 마스크, 호흡기 관련 밸브 및 케이블 등으로, 의료 영상 검출 보조 소프트웨어 장비는 면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ANVISA 인증을 취득한 유사 장비를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증 미보유 의료 장비에 대해서도 인증을 면제해 주고 있으므로, 귀사의 기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인증 전문가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 인증 대행 업체는 '카테고리별 전문가 및 컨설팅 업체 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MAPA

**(MAPA)** 저희는 사료 첨가제를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브라질에 저희 사료 첨가제 제품을 등록하고자 하는데, 혹시 등록 관련 규정을 알 수 있을까요? 혹은 자료 열람 가능한 웹 사이트 문의 드립니다.

**(답변)** 사료 첨가제 문의와 관련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 내용은 사료 첨가제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나, 제품에 따라 구비 서류나 등록 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품 등록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는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① **등록 기관:** 동물 사료 분야를 규제하고 감독하는 기관은 MAPA(농축산부)로 동물용 식품, 원료 및 사료 첨가제 등을 제조, 수입, 수출 및 판매하는 업체는 반드시 MAPA에 등록해야 합니다.
- ② **등록 규정:** 동물 사료 첨가제 관련 규정은 농축산부가 2007년 발표한 법령 6296호(Decreto nº 6.296/07)와 2004년 발표한 규정 13호 (Instrução Normativa nº 13/040)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③ **등록 방법:** MAPA 등록 신청서는 등록 대상 제품의 제조 업체나 수입 업체가 위치한 지역의 SFA(농업부 연방관리국)이나 UTRA(농업부 지역 기술관리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 ④ **구비 서류:** 등록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 해외 제조 업체 정보
  - (제조 업체가 아닌 경우), 실제 제조 업체 정보
  - 브라질 수입 회사가 MAPA 등록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무를 책임

- 지고 농축산부(MAPA)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조 업체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
- 해외 제조 업체가 취득한 영업 허가. 수출 업체가 제조사가 아닌 경우 실제 제조 업체의 영업 허가도 필요함
  - 원산지 국가에서 수출 목적으로 취득한 제품 생산 허가
  - 원산지 국가의 정부 공인 기관으로부터 취득한 GMP 서류

동물 사료 첨가제 MAPA 등록을 위한 기술 설명서 작성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 신청자 정보
- 제품명 또는 상표명
- 제품 기술적 특징
- 제조 공정 및 관리 방법
- flow chart를 통한 첨가제의 제조 공정에 대한 상세 설명
- 첨가제의 정성 및 정량 평가를 위한 분석 방법 기술
- 원료 및 첨가제(완제품) 관리 과정 상세 설명
- 제품 용도
- 제품의 물리적/화학적/기술적 특성 기술
- 사용 방법
- 포장 방법

㉔ **등록 유효 기간:** MAPA 인 증은 서류 심사 과정을 거쳐 발행되며 5년의 유효 기간을 보유합니다. 동물 사료용 첨가제는 반드시 MAPA 인 증을 발급받은 후에만 제조, 판매할 수 있습니다.

### ㉔ MAPA 인증 컨설팅 업체

- Stone Okamont [www.stoneokamont.com.br/](http://www.stoneokamont.com.br/)
- VSC <http://www.vscgestao.com.br>
- RAGB <https://www.ragb.com.br/>

**(ANVISA / MAPA)** 당사가 개발한 어린이 음료가 브라질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음료의 원료가 브라질 수출에 적합한지 상파울루 코트라에 문의 드립니다. 첨부 파일로 원료 성분명을 보내드리니 수출할 수 있는 성분인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답변)** 식품을 브라질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위생감시국(ANVISA) 또는 농축산부(MAPA) 인증이 필요합니다.

\* 기능성 식품: 위생감시국(ANVISA) / 일반 식품: 농축산부(MAPA)

첨부하신 성분 분석표를 살펴보니, 특별히 수출이 금지되어 있는 품목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ANVISA 인증이나 또는 MAPA 인증 업체, 식품 수입 전문 업체 등을 통해 보다 정확한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ANVISA나 MAPA가 수입 허가를 내주는 데 있어 요구하는 사항은 식품 성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귀사 음료 제품에는 인삼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보다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년 전에 브라질 위생 감시국 ANVISA가 인삼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한 적이 있었으나, 현재는 인삼 성분이 들어간 영양제 등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등 규제 상황이 달라졌는데 이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ANVISA)** 안녕하세요? 향기 시트를 브라질에 수출하려고 합니다. 이야기하는 사람마다 HS CODE가 달라 정확한 HS CODE는 잘 모르겠습니다. 브라질은 많은 제품이 ANVISA 허가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기 시트는 ANVISA 허가를 꼭 받아야 하는 것인지, ANVISA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하고, 만약 ANVISA 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이라면 해당 HS CODE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브라질에는 Glade사, Bom Ar사 등에서 만든 다양한 종류의 방향제 제품이 시판되고 있습니다. 방향제 제품에 부과되는 NCM\*은 3307.49.00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코드는 브라질 수입 업체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브라질에서는 HS CODE 대신, NCM(남미공동관세 코드)을 사용합니다. NCM은 총 8자리 숫자로 구성됩니다.

아래 링크는 NCM 3307.4900을 사용하는 제품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cosmos.bluesoft.com.br/ncms/33074900-outras/products>

방향제의 경우, ANVISA 등록을 취득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간단한 등록 과정을 거치면 허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사용 목적에 따라 보다 정밀한 테스트를 거쳐야 하는 경우(예: 자동차용 방향제의 경우,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 시 안전도 테스트 등을 거쳐야 함)도 있어 ANVISA 전문가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ANVISA 전문가 연락처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증 대행 업체는 '카테고리별 전문가 및 컨설팅 업체 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MAPA)**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저희 회사는 신약 개발업체입니다. 최근 국내에서 치매에 걸린 반려견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을 완료하고 농림 축산 검역 본부에 동물용 의약품 품목 허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① 만약에 국내에서 품목 허가가 승인된다면 이 제품을 브라질에서의 추가적인 임상 시험 없이 수출할 수 있을까요? 일부 국가에서는 타국에서의 임상 시험 결과를 인정하는 반면, 몇몇 국가에서는 반드시 현지에서의 임상 시험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브라질은 이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② 동물용 의약품의 경우 수출 승인 절차와 그 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바쁘시겠지만 한번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동물용 의약품의 브라질 수입 유통을 위해서는 농업부(MAPA) 인증 취득이 필수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위생감시국(ANVISA) 인증도 받아야 합니다. 브라질 정부는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실시한 검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며, 반드시 현지에서 실시한 시험을 통과해야 품질을 인정해 줍니다. 수출은 인증 취득 후에 가능한데 제품에 따라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이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인증에 관련된 보다 상세한 정보는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는 수의약품 등 동물용 제품 인증 전문 업체 사이트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Stone Okamont ([www.stoneokamont.com.br](http://www.stoneokamont.com.br))
- VSC ([www.vscgestao.com.br](http://www.vscgestao.com.br))
- RAGB ([www.ragb.com.br](http://www.ragb.com.br))

**(MAPA)**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소재한 동물 제품 업체입니다. 저희 회사는 내년 에 반려동물 정수기(HS CODE: 8421.99-9029)를 수출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만약 이 제품을 브라질에 수출하게 된다면, 수입 시 브라질에서 요구하는 규격이나 인증 등의 조건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반려동물의 사료, 간식, 영양제, 약품 등은 모두 브라질의 농림축산부 (MAPA)의 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MAPA 등록의 경우 제품마다 요구하는 조건 이 상이하기 때문에 상세한 정보는 전문 등록 대행 업체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또한 제품에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의 기능이 있다면 ANATEL(브 라질 방송 통신 위원회) 인증을 요구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라질 은 ‘가격 중심’ 시장으로, 제품의 품질보다는 가격이 거래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한국산 반려동물 제품들이 품질 면에서 뛰어난 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바 이어들이 중국산 저렴한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브라질에 반려동물용 제품을 수출하실 예정이라면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 ✓ ANATEL

**(ANATEL)** 안녕하세요, 폐사는 오토바이 헬멧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블루투스 무선 송수신기 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으며, 브라질 진출을 위해 ANATEL 인증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기존 CE, FCC 인증 대행 업체에게 문의하였으나, ANATEL의 경우 인증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직접 브라질에 문의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브라질이 아닌 제3국의 업체에서 ANATEL 인증 진행을 의뢰하려면 반드시 브라질 내 인증 대행 업체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인지요? 만약 그렇다면 브라질 내 인증 대행 업체를 소개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브라질로 전자통신 장비를 수출하려는 외국 기업의 경우, 브라질 ANATEL 인증이 필요합니다. 즉, FCC와 CE 등을 보유한 제품이라도 브라질 판매 유통을 위해서는 ANATEL 인증을 별도로 취득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한국 기업과 거래 경험이 있는 인증 대행 업체를 소개해드립니다.

\* 인증 대행 업체는 '카테고리별 전문가 및 컨설팅 업체 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

**(우든 패키지)** 브라질에 물품 수출 시 우든 패키징을 사용할 때는 방역 처리해서 훈증 마크가 찍힌 우든 포장만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든 패키징한 품목을 수출할 때는 방역 처리 증서를 수입자에 제공하고 우든 패키징 4면에 훈증 마크를 찍어서 보내는데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브라질 현지에서 방역 처리한 우든 패키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든 패키지를 다시 한국으로 돌려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패키지 반송 항공 운임 비용 등 부가적인 비용이 발생해서요.

혹시 이렇게 방역 증서 및 훈증 마크가 있는 경우에 왜 현지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고 한국으로 돌려보내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우든 패키지 현지 검사 주체가 누구인지(현지 브라질 세관에서 하는 건지, 항공사 혹은 공항 직원이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답변)

- ① 반송 사유: ISPM 15 국제 규격에 따르면 목재 포장재는 열처리 및 훈증 방역을 거쳐야 하는데, 브라질은 ISPM 15조에 따라 목재 포장재 검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열처리(HT) 소독, 메틸브로마이드 훈증 소독(MB), 마이크로웨이브 처리(DH) 세 가지의 소독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목재 포장재를 소독하고 소독 마크를 날인합니다. 이에 따라 브라질로 반입된 목재 포장재에 병해충이 적발되거나 감염 흔적이 발견될 경우, 혹은 IPPC의 마크가 없는 목재 포장재의 경우, 목재 포장재는 상품 일체와 함께 반송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송 비용은 이를 수출한 업체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귀사 목재 패키지의 반송 사유도 이 중 하나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 ② 현지 검사 주체는 세관의 검역 담당관입니다.

## 4. 통관

### ✓ 경매

**(경매)** 저희는 한국에 있는 물류 회사입니다. 2017년도에 컨테이너 11대를 브라질로 수출하였는데 아직까지 수입자가 물건을 찾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일전에 콜롬비아로 물건을 보냈을 때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는데, 선사에서는 6개월 동안 컨테이너를 보관하다가 경매 처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건의 경우 실 수입자가 현재 사업 운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찾아가갈 의사가 전혀 없으며 선사에서는 경매에 넘어갈 것이라고 경고만 할 뿐 여전히 선사 yard에서 보관하며 demurrage 비용만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브라질의 경우 수령하지 않는 수입 물품을 어떤 방법으로 처분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이 건으로 인해 발생된 demurrage 비용만 수역이 되어가고 있고 선사는 물류사에게 이 비용을 계속 청구하고 있는 상황이니 꼭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브라질에서도 압류된 화물이나 일정 기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화물은 경매에 부쳐진다고 합니다. 경매를 주도하는 곳은 연방 세무국이며, 경매 공고는 연방 세무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 건 관련하여 보다 전문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 연락처(물류 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물류 통관 업체는 부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구)**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조그마한 물류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요즘 국내에서 해외 직구 관련된 업체들이 많이 생겨나며 한국으로 상당량의 화물을 보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세계 각국의 통관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 메일 드립니다. 브라질의 경우 관세가 발생하지 않는 목록 통관 및 일반 통관의 금액 범위는 얼마까지인지요? 또한 통관 시 이슈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답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브라질의 경우, 우체국의 관세가 발생하지 않는 통관 금액은 USD 50.00이라고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긴 하나 거의 지켜지지 않고, Case by case로 복불복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무역관의 경우에도 간혹 한국 기업들이 보내주시는 소량의 카탈로그에도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일반 샘플은 아무런 문제없이 통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례로 작년에 한국의 한 업체로부터 USD 5.00로 신고한 샘플 한 박스를 받았는데, 금액상 아무런 문제없이 통관이 되어야 하는 제품이지만, 총 USD 70.00 가량의 세금을 지불하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관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되는 실정입니다. 또 소요 시간이 길 뿐 아니라 중간에 분실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따라서 저희 무역관의 경우, 비싸더라도 DHL이나 FedEx와 같은 Courier 업체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클레임)** 폐사는 한국에서 브라질로 부품을 수출하는 기업입니다. 브라질에서 품질 불량을 이유로 반환 청구한 금액 중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 항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AFRMM TAX, ICMS, DECONSOLIDATION TAX 4, DI ISSUANCE, COFINS, IPI, PIS 상기 7가지 세금을 모두 폐사로 청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폐사에서 지불하지 않아도 A사가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을 분류하여, 제외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 ① 상기 7가지 세금 각각의 성격과 목적, 적용 대상 및 적용 세율, 환급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② 한국의 부가세 환급 개념과 같이 매입에 대한 세금으로서 매출 세금과 환급이 가능한 세금은 무엇인지요?
- ③ 클레임 물품을 한국으로 return을 요청하게 되는 경우, 상기 7가지 세금은 모두 A사에 refund 받을 수 있는지요? return으로 환급이 불가능한 세금은 추후, 부가세 환급처럼 환급이 가능한 것과 절대 환급 불가능한 세금은 어떤 건지요?
- ④ 브라질에서 한국으로 return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브라질에서 무상 대체품 수입에 대해서도 애로를 표했으며, return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것 우려됨.)

**(답변)** ① -AFRMM TAX: 해상 운송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운송료의 25%입니다.

-ICMS: 주 정부가 상품 및 서비스에 부과하는 유통세로 국산품과 수입 제품 모두에 적용됩니다. 유통세는 공장에서 출하되거나 수입품이 통관될 때 과세되며, 운송이나 통신 서비스의 경우에도 부과됩니다. 과세율은 주 정부에 따라 7~20%가 부과되어 타 주로 출하되는 제품에는 7~12%, 수입품에는 4%가 부과됩니다. 상파울루 주 내에서 유통되는 경우 통상 18%가 부과되지만 품목에 따라 감면 또는 인상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DECONSOLIDATION TAX: 화물 소분(팔레트 단위의 물건을 소량으로 나누는 작업)에 부과되는 수수료.

-DI ISSUANCE TAX – 확인이 어렵습니다.

-COFINS: 대부분의 경우 PIS(사회 기여세)와 COFINS(사회 보장세)가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PIS/COFINS로 불리며 기업의 매출, 수입 제품이나 서비스 등에 대해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PIS는 0.65~1.65%, COFINS는 3 ~ 8.6%의 세

율이 적용됩니다.(수시로 변동 가능성이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IPI: 공산품세는 연방 부가 가치세라고도 하며, 생산품이 공장에서 출하될 때나 수입품이 통관될 때 과세됩니다. 0~300%까지 제품 종류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음. 일반적으로 담배나 향수 등 생필품이 아닌 경우 세율이 높고 생필품은 세율이 낮은 편입니다.

②, ③, ④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세금은 ICMS, IPI, PIS/COFINS 등 3가지가 있으며 각각의 세금은 크레딧 형태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세금을 납부하고 확보한 크레딧은 생산에 필요한 기계 및 원자재 구입, 전기 요금이나 운송비 납부 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채택한 과세 산정 방식에 따라 환급 가능한 세금이 달라지며, 크레딧이 쌓여도 브라질 정부의 관료적인 행정 처리로 인해 실제로 세금을 환급받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무 전문가를 통해야만 정확한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국으로 화물을 반송하는 경우, 물류 통관 업체와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전 수입 허가)** 안녕하세요. 브라질에 전기 강판을 수출할 예정으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① 브라질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입 허가서(I/L)을 발급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수출업자와 브라질 수입업자 모두 브라질 상공개발부(MDIC)산하 대외무역국(SECEX)에 등록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등록을 수출업자가 진행해야 하는 것인가요? 수출업자가 진행해야 한다면 등록 절차 안내 부탁드립니다.

- ② 수출 예정인 제품의 HS CODE는 7225.11입니다. 해당 제품이 사전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③ 그밖에 브라질 수출 기업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 (답변)

- ① 대부분의 제품의 경우, 브라질 수출에는 수입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품목의 경우 대외무역국(SECEX) 등록을 통해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수입 허가는 수입 업체가 받아야 하며, 수입 업체명, 수출 업체명, 원산지 등과 같은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 ② 브라질 개발 통상 서비스국을 통해 확인해보니 HS Code 7225로 시작하는 품목 중 수입 허가가 필요한 것은 7225.1900, 7225.4090, 7225.3000, 7225.4090 등 4개 품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출 예정 제품인 HS CODE 7225.11는 사전 허가 품목 리스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7225로 시작하는 4개 품목이 사전 허가 대상이므로, 만일 브라질에서 다른 코드를 사용한다면, 사전 허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브라질 바이어를 통해 현지에서 사용하는 코드 번호가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③ 최근 브라질 수출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시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바이어가 의심이 갈 만한 행동을 하는 경우 반드시 저희 무역관이나 다른 믿을 만한 기관을 통해 진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품)** 저희는 IT 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문제로 브라질에 납품한 제품에 클레임이 생겼고, 고객은 제품 반품 및 수리를 요청하셨습니다만 들려오는 답변에 의하면 브라질 세법상 완제품이 아닌 이상 반제품에 대해서는 반출이 불가하다고 하여 전부 반품 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실제 브라질 세법, 세관 등이 그런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국내 상담을 드리니 브라질이 특히 까다롭다고 해서 정식으로 여기에 문의하라고 하셨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답변)** (말씀 들으신 것처럼) 브라질 세법, 세관은 매우 까다로워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브라질 연방 세무국 법령(Portaria MF 150/82)에 따르면, 문제가 발생한 제품의 경우, 완제품 전체는 수입국으로 되돌려 보내 수리하여 재수입할 수 있으나 제품의 일부나 부품만은 반품이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령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수입 통관 분야 전문가를 통해 혹시 다른 방안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는 통관 업체 연락처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통관 업체 리스트는 부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허가)** 안녕하세요? 저희는 산업용 필름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약 4주 전에 브라질에 신규 거래처를 발굴하여 거래처에서 사용하는 HS CODE (3921.90.19)로 샘플을 발송하였는데 저희가 브라질에 수출한 실적이 없다며 DECEX/BRAZIL에 업체 등록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저희가 보낸 제품에 대한 Technical report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Technical report는 반드시 공공 기관이나 한국 정부 관련된 기관에서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디서 발급받아야 하는 것인지도 몰라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답변)** 브라질 정부 사이트를 조회한 결과, 문의하신 3921.90.19 제품은 ‘사전 수입 허가’가 필요한 제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다수의 제품은 사전 허가 없이 수입이 가능하나, 브라질 정부 차원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일부 품목들은 선적 전에 사전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마도 브라질 바이어 측에서 요구하는 ‘Technical report’는 사전 수입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Technical report’는 명칭이 다소 광범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요구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브라질 바이어에게 ‘Technical report’의 포르투갈어 명칭이 무엇인지, 한국 어떤 기관이 발급한 서류여야 하는지 등을 문의하셔서 저희에게 알려주시거나, 또는 바이어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직접 바이어와 접촉하여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통관)** 저희는 과일 음료를 브라질로 수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문의드릴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브라질의 과일 음료 세번 및 관세율
- ② 브라질의 전반적인 식품 수입 통관 절차
- ③ 브라질로 식품 수출 시 유의해야 할 사항
- ④ 브라질의 수입 업체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인증이나 권장 인증 등을 문의 드립니다.

**(답변)**

- ① 브라질에서의 과일 음료 HS CODE는 2202.99.00입니다.
- ② 브라질의 전반적인 식품 수입 통관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수입 업체는 SISCOMEX(무역 서류 전산화 시스템)를 통해 수입하고자 하는 식품이 ‘사전 수입 허가(LI)’ 대상 품목인지 여부 확인

[http://siscomex.desenvolvimento.gov.br/tratamento/private/pages/consulta\\_tratamento.jsf](http://siscomex.desenvolvimento.gov.br/tratamento/private/pages/consulta_tratamento.jsf)

- Grupo de Pesquisa에서 ‘NCM’ 선택, Abrangencia do NCM 에서 ‘Subitem’을 선택하시고 HS CODE를 입력
  - 사전 수입 허가 품목인 경우, 세부 코드가 화면 하단에 뜨며, 허가 기관 등 자세한 정보는 화면 우측 끝에 ‘Detalhes’ 클릭하여 확인
  - 사전 수입 허가가 필요한 품목으로 판정될 경우, SISCOMEX에 수입 품목의 정보(NCM(HS CODE), 무게, 가격, 수출 업체 정보 등)를 입력하여 허가를 요청함
  - 식품의 경우, 사전 수입 허가 기관이 MAPA(농축산부) 또는 ANVISA(위생감시국)이며 수입 업체가 등록된 정보를 검토하여 사전 수입 허가를 발급함.
  - 사전 수입 허가가 발급되면 수출 업체에게 통보하여 화물 선적을 요청함
  - 화물이 브라질 항구 도착 후 MAPA 또는 ANVISA 검사관이 화물 검사를 실시함.
  - 화물 검사 후 수입 신고(DI) 및 세금 납부
  - 통관 완료
- ③ 브라질로 식품 수출 시 유의해야 할 사항: 식품은 반드시 MAPA(농축산부) 또는 ANVISA(위생감시국)의 사전 수입 허가를 선적 전에 받아야 합니다.
- ④ 브라질의 수입 업체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인증이나 권장 인증: 식품은 반드시 MAPA(농축산부) 또는 ANVISA(위생감시국)의 사전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기관은 식품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허가 기관은 위에서 말씀드린 SISCOMEX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CKD)** 안녕하십니까? 페사는 자동차 수동 클러치를 주 품목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페사는 현재 세계 각국에 A/S 품목을 수출 중이오나 중남미에서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인 브라질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타개책으로 브라질 현지 업체와 JV를 검토 중에 있지만, 자료를 수집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하기와 같이 문의를 드리고자 하오니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전달 부탁드립니다.

- ① 관세율을 낮출 수 있도록 CKD 형태로 제품을 수출하여 현지 조립 공장에서 조립할 시 부과되는 세율
- ② 관세율이 낮은 부품들만을 수출하고 높은 품목들은 현지에서 조달하여 현지 공장에서 조립할 시(SKD) 브라질 현지 생산품이라고 인정되는 비율 RVC or CTH(브라질 % : 수입품 %)
- ③ 하기 HS CODE에 따른 현지 수입 관세율 (IPS, PIS, COFINS, ICMS 등 현지에서 부과되는 모든 세율 포함)

정확하지 않더라도 대략적으로라도 부탁드립니다.

#### HS CODE

- 1) 7326.90 2) 7320.90 3) 7320.20 4) 7318.23 5) 7318.22 6) 4017.00
- 7) 3926.90

#### (답변)

- ① 브라질 정부는 대체적으로 완제품보다 반제품이나 부품에 대해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CKD로 수출, 현지 공장에서 조립 시 얼마만큼 세율이 낮아지는지는 제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 3번의 HS CODE별 세금 참고

② 수입 부품과 국산 부품을 사용하여 브라질 공장에서 조립 생산하는 경우, 현지 생산품으로 인정받기 위해 요구되는 비율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브라질에는 부품의 대부분을 수입하여 현지에서 간단한 가공만 거쳐 'made in brazil' 제품으로 출시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브라질에서 생산하여 멕시코 또는 메르코수르 역내 국가로 수출을 하는 경우는 일정 비중 이상 국산 부품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이때 요구되는 비중은 국가마다 차이가 납니다. 일례로 브라질과 멕시코가 합의한 국산 부품 사용 비중은 40%입니다. 브라질에서 세금 감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요구되었던 국산 부품 (Local Contents) 의무 사용 비중도 Inovar Auto 정책 폐지와 함께, 현재는 요구되고 있지 않습니다. Inovar Auto 정책은 WTO로부터 불법 인센티브로 판정받아 2017년 12월 종료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브라질에서 생산 후 수출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산 부품 사용 비중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완제품 대신 부품을 들여와 현지 조립하는 것이 그나마 절세를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부품 수입 시에는 불필요하게 높은 관세로 부담을 늘리지 않도록 올바른 제품 코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한 제품 코드라도 제품 사양이나 용도에 따라 관세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단위: %

	II (수입세)	IPI (공업세)	PIS/PASEP (사회 기여세)	COFINS (사회 보장세)	ICMS (유통세)
7326.90	2/18	5	2.1	9.65	18(ST)
7320.90	16	5	2.1	9.65	18(ST)
7320.20	16	15	2.1	9.65	18(ST)
7318.23	16	10	2.1	9.65	18(ST)
7318.22	IS	10	2.1	9.65	18(ST)
4017.00	16	4/15/18	2.1	9.65	18(ST)
3926.90	0/2/18	15	R	R	18(ST)

- \* 유통세는 주(州)마다 상이함. (상파울루 주의 경우는 18% 부과). 상기 품목 모두에 유통세 대체 세금(ST)이 부과될 수 있음. 유통세 대체 세금은 브라질 정부가 제품 생산업체나 수입 업체에게 해당 제품의 판매 유통 과정 전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모두 미리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임. Ex) 음료수의 경우 제조업체가 제품 판매 유통 과정 전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통세를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나머지 업체(도매 및 소매업체)들은 유통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음.
- \* 7326.90 제품의 경우 제품 사양(또는 용도)에 따라 수입세가 2% 또는 18%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
- \* 4017.00 제품의 경우 제품 사양(또는 용도)에 따라 공업세가 4% 또는 15% 또는 18%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
- \* 3926.90 제품의 경우 제품 사양(또는 용도)에 따라 수입세가 0% 또는 2% 또는 18%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
- \* 7318.22 제품의 수입 관세는 현재 면제(IS)되고 있음.
- \* 3926.90 제품의 사회 기여세와 사회 보장세는 감면(R) 혜택을 받고 있음.

**(세금 인센티브)** 안녕하세요, 브라질에서 화물 수입 시 발생하는 ICMS COST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원래는 부산에서 출발하여 Itajai로 가야 할 화물이었는데 업무 오류로 인해 SANTOS PORT로 발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Santos에서 Itajai로 화물 보세 운송 시 발생하는 비용 외에 ICMS 비용이 발생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CFS VALUE가 약 USD 35,000 정도인데 ICMS 비용이 약 USD 7,000이나 된다고 합니다. 첨부하여 드리는 메일을 보시면 ICMS 비용이 Itajai에선 1%, Santos에선 17%라고 하는데 해당 화물은 최종 Itajai에서 통관 및 화물 릴리즈가 되는 것인데 왜 Santos에서 저러한 비용이 발생되는지요? Itajai로 알맞게 발송되었다면 해당 비용이 정부 관리하에 면제되는 비용이라고 하는데, 저희 측에서는 해당 사항을 정확히 확인할 길이 없어 큰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해당 내용 확인하시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Itajai 항이 위치한 Santa Catarina 주 정부는 동 항을 통해 수입되는 화물에 대해 유통세(ICMS)를 1%만 징수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언론 기사를 보니 이 같은 세금 인센티브 때문에 Itajai 항을 통해 수입되는 화물이 26%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한편 Santos 항은 상파울루 주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파울루 주 정부는 유통세 감면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두 항구는 약 61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Santos에서 Itajai로 운반하기 위해서는 유통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브라질 수입 업체 말대로 Itajai 항으로 보내졌으면 1%의 유통세만 납부할 수 있었는데, Santos로 잘못 발송되어 거액의 유통세가 발생하게 되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샘플 통관)** 일전에 문의 드린 H사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아래의 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① 샘플은 수입 신고필증을 정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정식 통관된 물품의 가격, 수량, 단위는 수입 신고필증 정정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신고 관련해서는 저희 측 과실을 인정합니다.
- ② 브라질 관세법상 한번 신고된 가격은 변경될 수 없어 이후에도 같은 가격으로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같은 품명 및 규격입니다.) 예를 들어, 업체의 사정에 따라 첫 번째 선적 건에 결정된 가격 100불, 두 번째 선적 건은 샘플로서 50불, 세 번째 선적 건에 대한 가격은 80불로 신고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 (답변)

- ① 전문 통관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통관이 이미 이루어진 제품의 수입 신고필증 내용 정정은 어려울 것이 라는 의견입니다.
- ② 동일한 제품일 경우에도 반드시 동일한 가격으로 신고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처음 신고한 가격보다 지나치게 낮게 신고하는 경우 연방 세무국의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격 신고와 관련하여, 딱히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00달러짜리를 80달러에 신고해도 된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운이 나쁘면, 작은 가격 차이에도 세무국에 걸릴 수도 있고 가격을 낮추어 신고하더라도 운이 좋으면 별문제 없이 통관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어 수출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위험 가능성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한편, 샘플 명목으로 반입된 경우 가격은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CKD)** 안녕하세요. 당사는 지문 인식기를 제조, 수출하는 기업입니다. 브라질로 당사의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데요. 완제품으로 수출할 시 브라질에서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부품으로 수출하고 브라질 현지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많이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① 이에, 당사 제품의 **HS CODE**의 경우, 브라질 수입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② 또한 해당 **HS CODE**의 경우, 브라질 수입 시 별도의 인증 같은 것이 필요한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완제품: 8471.60.1090**

**부품 : 8473.30.9090**

그리고 부품으로 수출하고 브라질 현지에서 단순 조립하여 완제품으로 만들 경우, 원산지를 Made in Korea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Made in Brazil로 해야 하는지요? 혹시 관련 규정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① 수입 관세 8471.60.1090: 브라질 관세 코드(NCM)는 8자리로 구성되어 있어 8자리까지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NCM에서 8471.60으로 시작하는 제품의 경우, 뒷 번호(7번째 숫자)가 1로 이어지는 제품이 없음. 8471.60으로 시작하는 제품은 52/53/54/59/61/62/80/90 등과 같은 번호가 이어지며 뒷 번호(7번째 및 8번째)에 따라 0~16%의 수입 관세가 부과됩니다. 8473.30.9090: 브라질 관세 코드에는 8473.30.90이라는 코드는 없습니다. 가장 근접한 코드로는 8473.30.92와 8473.30.99가 있는데 8473.30.92의 관세율은 0%이며 8473.30.99의 경우는 0% 또는 8%(사

양에 따라 다르며, 20여 가지 사양이 존재함)입니다.

- ② 기계류는 대체적으로 INMETRO(국가계량품질기술원) 인증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품명이나 코드만 가지고 인증 필요 유무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인증 필요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는 INMETRO 인증 전문가 연락처이니 귀사 제품의 정보를 상세히 알려주시고 인증 필요 유무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체명: NCC Certificações do Brasil**

**C/P: Ms. Michele Moreira (michele.moreira@ncc.com.br),**

**Ms. Guisla Martins (guisla.martins@ncc.com.br)**

- ③ 원산지 상파울루 상업 협회(ACSP)의 원산지 증명 담당자 Mrs. Angela와 통화한 결과, “수입산 부품을 브라질 현지에서 조립하는 경우, 현지에서 어떤 가공 과정이 일어나는지에 따라 원산지가 달라진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완제품을 수입하여 현지에서 포장 후 판매하는 경우는 원산지가 ‘수출국’이 되지만, 해체된 부품을 수입하여 브라질 현지에서 조립하는 경우에는 원산지가 ‘브라질’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Mrs. Angela는 수출 제품 설명, 브라질 현지에서의 가공 과정 등과 같은 상세 정보가 있어야 정확한 원산지 판단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메일이나 유선으로 문의를 부탁한다고 하였습니다.

**Mrs. Angela Garcia (ACSP 원산지 증명 담당)**

**Tel: (55-11) 3180-3873 Email: agarcia@acsp.com.br**

감사합니다.

**(원산지 증명)** 브라질에 건설 중장비(굴착기 및 휠로더) 수출 시 원산지 표기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① 건설 중장비의 원산지 표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요? 예를 들어 중국에서 생산하여 수출 시, 장비에 'Made in China'라는 표기가 없는 경우 해당 국가의 통관이나 판매 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② 원산지 표기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원산지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최종 조립이 완료되는 지역을 기준으로 표시해야 하는지, 조립되는 부품의 원산지 비율에 따라 결정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 ① 브라질 정부는 모든 수입 제품에 대해 원산지 표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기가 누락되거나 잘못된 정보를 표기하는 경우, 통관 및 판매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벌금이 징수될 수도 있습니다.
- ② 귀사의 경우 원산지 증명은 한국이나 중국에서 받아오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산지 증명 관련 상세 정보는 관세 법령 정보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 5. 기타

**(기업 확인)** 당사는 브라질 업체에 외상 매출 채권이 있었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3년의 기간이 경과하였습니다. 국내 기준으로 채권 소멸 시효가 완성된 것이지요. 브라질 국내의 채권 소멸 시효도 국내와 동일한 3년인지, 아니면 다른 특정한 기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사가 거래한 브라질 업체의 사업 계속 여부, 파산 여부, 재무 상태 등을 한국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있는지 정보를 주시면 정말 당사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브라질 채권의 경우 5년이 지나면 신용 정보 업체 SERASA 채무자 리스트에서 삭제됩니다. 그러나 채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5년이 지난 채권은 통상 추심 업체로 넘어가게 됩니다. 브라질 기업의 사업 지속 여부, 파산 여부 등은 신용 정보 업체 SERASA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기업 신용 정보는 SERASA 회원에게만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브라질 업체의 이름과 CNPJ(법인 납세 번호)를 알려주시면 저희 무역관에서 SERASA를 통해 간략한 신용 정보를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한편, 브라질 중소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재무 상태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증시 상장 기업일 경우는 상파울루 증시(BOVESPA) 사이트를 통해 간단한 재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 확인)** 저는 한국 내에서 중계무역 및 수출, 내수 판매를 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금회 중국에서 닭발과 날개에 대한 수요가 있어, Bank of China의 LC를 받아 거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브라질 BRF 사기 사례가 많아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연락을 드립니다. 첨부와 같이 해당 업체로부터 계약서 초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BRF의 정보에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추가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등의 내용을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최근 들어 한국이나 중국 등으로부터 브라질산 닭고기 수요가 증가함과 함께 사기 사건의 건수 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BRF의 오퍼(Offer) 역시 사기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BRF의 경우, 한국에도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의 모든 거래는 그쪽을 통하여 진행을 하며(현지에서 진행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물량은 이미 기존 거래선들과 수년간 공급 계약이 되어 있어 신규 구매 업체와 사업이 성사되기는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오퍼(Offer) 역시 대기업에서 제작되었다고 보기엔 매우 영성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국의 다른 업체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오퍼(Offer)를 받았는데, 진정성이 있는 회사인지 확인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었습니다. 보내주신 연락처를 보니, 동일한 업체인 것 같네요. 전체적으로 양식과 형태, 회사명 등만 변경을 하고, 연락처 및 접근 방식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서류상 기재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 봤습니다. 브라질인이 아닌 아프리카 역양의 영어를 쓰시는 분이 받았습니니다. 포르투갈어는 전혀 못하고 영어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희가 포르투갈어로 대화를 시도하자 이해하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저희가 “BRF의 수출 담당자와 통화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니 얼버무리다 끊어버렸습니다. 사기 시도 가능성이 높은 업체로 거래하지 마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BRF의 아시아 담당은 신현일 씨이며 연락처는 hyunill.shin@brf-asia.com입니다.

**(기업 확인)** 지난번에 회신 감사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브라질에서 발행한 것으로 다시 보내달라고 했더니 첨부 파일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첨부 파일도 왠지 가짜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시간 괜찮으실 때 이 첨부 파일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답변)** 보내주신 서류를 살펴보니, 브라질에서 발행한 사업자 등록증 양식이 맞고, R사의 사업자 등록번호(CNPJ)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증 조회 날짜가 2019년 6월 18일로, 너무 오래전에 발급받은 문서를 보냈다는 느낌이 들어 좀 더 심층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브라질 신용 정보 업체 SERASA EXPERIAN을 통해 확인한 결과, R사는 2019년 9월 19일자로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동 업체는 현재 브라질 상업 등기소에 폐업을 신고한 상태로, 거래 시에는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럴듯해 보이는 홈페이지를 꾸며놓고 사업자 등록증까지 제시하면서, 브라질 사정을 잘 모르는 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시도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거래를 요청하는 업체가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면 언제든지 저희 무역관을 통해 업체의 실제 존재 여부나 서류의 진위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거래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업 확인)** 저는 L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최근 브라질 업체에서 대량 오퍼(Offer)가 왔습니다. 구글링해보니 업체 정보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것 같아 무역 사기인지 염려되어 바이어 정보 확인 요청 드립니다.

**(답변)** 문의하신 A사를 검색해보니 말씀하신 대로 업체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

습니다. 동일인 이름의 회사 몇 개가 검색되었으나, 알려주신 주소와 다른 지역에 위치한 업체로 확인되었고, 홈페이지나 기타 다른 정보를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브라질 업체들의 경우, 외부적으로 사용하는 상호와 상업 등기소(Junta Comercial)에 등록돼 있는 업체명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업체 정보 확인에는 공식 법인명(Razao Social)이 필요합니다. 또한 업체 신용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인 납세 번호(CNPJ)가 있어야 합니다. 브라질 바이어를 통해 A사의 법인명(Razao Social)과 법인 납세 번호(CNPJ)를 확보하여 알려주시면 신용 정보를 확인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업 정보)**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중남미 시장 진출에 앞서, 브라질 또는 중남미 통합 공시 정보 사이트와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일부 중남미 국가들과 같은 경우 기업 Annual Report(IR)을 통해 기업 정보를 공시하기도 하지만, 브라질 기업과 관련하여 공시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브라질 혹은 중남미 기업 공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사이트까지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저희 KOTRA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브라질 기업 공시 정보는 상 파울루 주식 시장(BOVESPA)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를 열람하시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http://www.b3.com.br/en\\_us/](http://www.b3.com.br/en_us/) 클릭
- 2) Listed Companies 클릭
- 3) 기업 이름의 이니셜을 클릭(페이지 하단에 위치)
- 4) 정보 열람을 원하는 기업을 리스트에서 찾아 클릭
- 5) 기업 정보 열람

**\* BOVESPA 상장 기업 정보**

[http://www.bmfbovespa.com.br/pt\\_br/produtos/listados-a-vista-e-derivativos/renda-variavel/empresas-listadas.htm](http://www.bmfbovespa.com.br/pt_br/produtos/listados-a-vista-e-derivativos/renda-variavel/empresas-listadas.htm)

**(기업 정보)** 안녕하세요? 당사에서 해외 시장 조사 차원에서, 브라질 로컬 업체에 대한 자료 수집 중입니다. 브라질 업체 중 가칭 M에 대한 매출이나 손익 관련 자료 요청 드립니다.(15~18년) 혹은 브라질 업체 재무 현황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사이트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브라질의 경우, 상장 기업이 아닌 이상 재무제표 공개가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매출 정보를 알기 어렵습니다. 상파울루 증시(BOVESPA) 홈페이지에서 M社를 찾아보았으나 동사는 상장 기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도 M社 관련 기사를 찾아보았으나 매출액 정보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 M社사가 정부 조달 업체로 등록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브라질에서 정부 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가 없어야 하고 재정 상태도 양호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M社사도 적어도 채무 등의 문제가 있는 기업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정부 조달 기업 정보**

[http://compras.dados.gov.br/fornecedores/doc/fornecedor\\_pj/04645160000149](http://compras.dados.gov.br/fornecedores/doc/fornecedor_pj/04645160000149)

**(기업 정보)** 저희 그룹의 브라질 자회사가 2019년에 청산되었는데, 청산 사실을 간단히 증빙할 수 있을 만한 서류(예. 등기부 등본 등)를 열람하고 수취하고자 합니다. CPF나 CNPJ 코드 등은 모두 가지고 있는데 직접 상업 등기소 온라인 웹 사이트에 접속해보니 비밀번호가 있어야 열람이 가능한 것 같은데, 혹시 코트라에서 이 부분을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신지요? 청산은 현지 변호사를 통해 진행했습니다만, 등기부 등본의 열람은 비교적 간단한 일로, 이 건으로 다시 현지 변호사에 연락을 취하는 것이 비용이나 절차상 번거로운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답변)** 청산 증빙은 브라질 연방세무국(Receita Federal) 홈페이지 방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브라질에 설립하셨던 자회사의 Full Name과 CNPJ를 알려 주시면,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정보)** 미용-의료용 기기 수출 회사입니다.

- ① 저희 제품 관련하여 브라질 E사에서 컨택이 왔는데, 회사 웹 사이트 등 회사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창구가 없어 E사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미용 의료 기기를 클리닉과 의사들에게 판매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 ② 현재 저희 회사는 얼굴 리프팅용 실(HS CODE 33006.1010 또는 9018.32.9000)을 생산, 수출하고 있습니다. 의료 기기 4등급이며 CE는 Class 3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 목록을 또한 추가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답변)**

- ① 브라질에서 기업 신용 정보 조회를 위해서는 상업 등기소에 등록된 CNPJ(법인 납세 번호)가 필요한데, E사의 회사명으로는 CNPJ를 검색할 수 없었습니다

니다. 물론 상업 등기소에 E사가 다른 이름으로 등록하여 CNPJ를 취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브라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고 신뢰할 만한 기업이라면, 외부에 노출되는 일반 상호로도 대부분의 경우 기업 정보 및 CNPJ 검색이 가능합니다.

알려주신 연락처로 전화해보니, 처음에는 계속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가다가 한참 만에 어떤 남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어디시죠?”라고 물으니, 한참 주저하더니 “그건 왜 물어 보죠?”라고 대답하며, 먼저 회사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E사가 맞느냐”고 물었더니, 그제야 E사가 맞다고 하며 무슨 일로 전화를 했냐고 물었습니다. “인터넷에서 E사 홈페이지를 검색할 수 없어 전화했다”고 했더니, 현재 홈페이지 제작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럼 “어떤 제품을 주로 취급하느냐, 회사 소개를 해달라”고 했더니 미용 제품, 미용 기기 전반을 취급한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구체적인 품목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외국 업체만 컨택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 연락처를 알게 됐느냐”라고 제게 되물었습니다. 남자 음성도 잘 안 들리는 데다가 잡음도 많아 결국 통화를 종료하게 되었는데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E사는 제대로 된 영업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영세 업체이거나 심지어는 브라질 시장을 잘 모르는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사기를 시도하는 업체일 수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② ANVISA 등급 분류와 구비 서류 정보는 제품 종류와 특징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히 안내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전문가를 통해서만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 정보)** 브라질 고객 H사의 최근 몇 년간의 매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을까요? (국내에서는 사람이나 잡플래닛 등의 사이트에서 매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답변)** 신용정보 사이트 SERASA(유료)를 통해 기업 신용 정보를 조회하면, 최근 12개월 매출액의 대략적인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데, H사의 경우, 최근 12개월 매출이 12,125,000헤알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동 업체의 경우 현재 ‘2020년 10월 4일 기준 영업 중’이며, 대표자나 법인 신용에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2020년 8월과 2016년 12월, 2건의 채무 기록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가 해결된 후에도 SERASA 사이트에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 2건의 채무가 실제로 현재까지 남아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브라질에는 증시 상장 기업이나 대기업이 아닌 경우 매출을 확인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상장 기업의 경우, 상파울루 증시(BOVESPA)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BOVESPA 상장 기업 정보**

[http://www.bmfbovespa.com.br/pt\\_br/produtos/listados-a-vista-e-derivativos/renda-variavel/empresas-listadas.htm](http://www.bmfbovespa.com.br/pt_br/produtos/listados-a-vista-e-derivativos/renda-variavel/empresas-listadas.htm)

**\* 브라질 500대 기업 정보**

<https://exame.com/wp-content/uploads/2019/08/mm2019-500-maiores-001a-500.png>

**(주재원 파견)** 안녕하세요. 당사는 건설 업체이며, 브라질에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지 법인장의 퇴사 및 코로나19 이슈로 인해 법인장 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하여 현지 법인장 교체를 위해 현지 대행사 소개 또는 코로나19로 인해 현지 파견이 어려운 상황이기때 국내에서 교체할 수 있는 방안 부탁드립니다.

**(답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브라질 법인장 교체 관련하여서 법인 대표자 명의 변경, 정관 이전 등 대부분의 절차가 브라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대부분의 기업들이 법인장 및 주재원 교체 시 상당 부분의 프로세스를 브라질 현지에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현재 근무 중인 법인장의 경우 한국인 국적자로 영주권(60만 헤알 투자)을 발급받아 브라질에서 법인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현지인)가 법인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에 따라 교체 프로세스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아래와 같이 저희가 보유한 브라질 헤드 헌팅 업체 리스트를 공유 드립니다.

### 브라질 헤드 헌팅 업체 리스트

기업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비고
Beyond HR	Juliana Park	11-94134-4910	juliana.park@bydhr.com.br	www.beyond.com.br	한국어 구사 가능 인력을 발굴하는 한국인 교포 매니저 근무 중
Holden	Jonas Kaffka	51-99399-6090	jonas@holdenrh.com.br	www.holdenrh.com.br	기술 관련 분야 고용에 집중하고 있으며 상파울루에서 사무실을 두고 있음. 기술 관련 분야 제외해 무역, 물류를 비롯하여 각종 분야를 담당하고 있음

기업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비고
Soulan	Anderson Nagado	11-99350-1363	anderson.nagado@soulan.com.br	www.soulan.com.br	약 30년 전에 설립된 고용 알선 기업으로서 다국적 기업인 Toyota, Ambev, Grupo Pao de Acucar를 비롯하여 5000여 개사의 고객사에 서비스를 제공
Adecco Brasil	Andresa Ceschin	11-94469-8694	andresa.ceschin@adecco.com	www.adecco.com.br	아데코 그룹은 세계 유수의 경제지가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으로, 전 세계 네트워크를 통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다 더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참고 사이트)** 브라질의 주요 무역 통계 자료 사이트 및 산업별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사이트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무역 통계 자료 사이트 및 산업별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사이트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COMEXSTAT

- 수출입 통계 (포어, 영어, 스페인어)
- <http://comexstat.mdic.gov.br/>

#### ○ ANFAVEA

- 자동차 생산 및 수출 통계(포어)
- <https://anfavea.com.br/estatisticas>

**○ SINDIPECAS**

- 자동차 부품 생산 및 수출 통계(포어, 영어)
- <http://www.virapagina.com.br/sindipecas2021/2/>

**○ FENABRAVE**

- 완성차 업체별 판매 및 시장 점유율 통계(포어)
- <http://www.fenabrave.org.br/portal>

**○ MDIC/DEFESA COMERCI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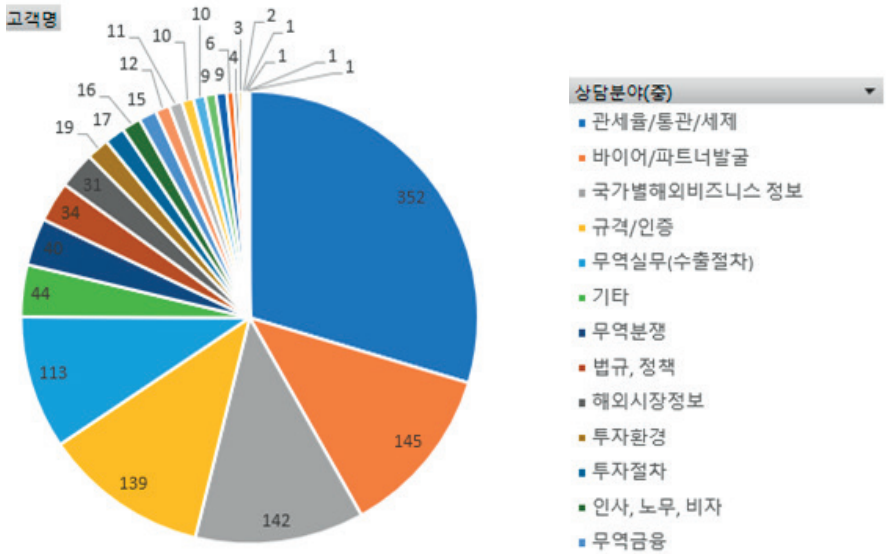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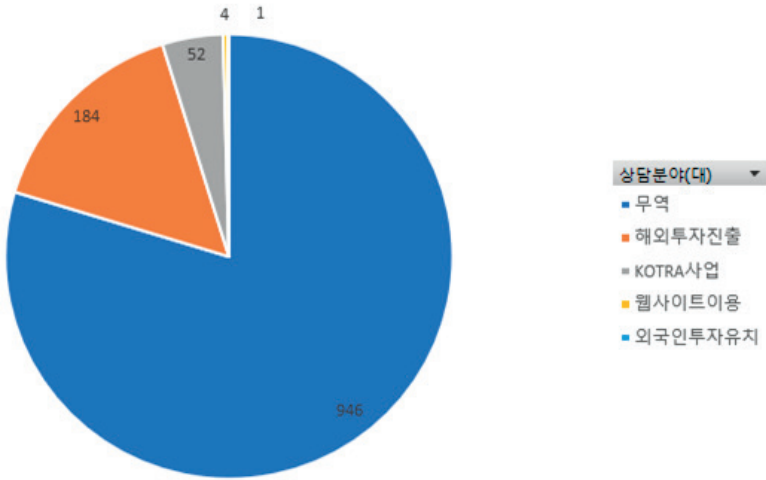
- 반덤핑 품목 리스트
- [comercio-exterior/defesa-comercial-e-interesse-publico](http://comercio-exterior/defesa-comercial-e-interesse-publico)

## II.

# 최근 3년간 상파울루 무역관에 접수된 Q&A 통계

2016년 ~ 2021년 10월 6년간 총 1,187개의 상담 중 80%는 무역, 16%는 현지 투자에 관련된 것이다. 세부적으로 고객들은 관세율/통관/세제(30%), 바이어/파트너 발굴(12%), 국가별 해외 비즈니스 정보(12%), 규격/인증(12%), 무역 실무(수출 절차)에 관하여 문의하였다.

상파울루 무역관은 고객의 브라질 진출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사례집을 <세무/관세>, <노무>, <인증>, <통관>, <업체 연락처 및 사기 유무 확인>, <기타>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브라질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다른 기업들이 남긴 질문과 답변을 확인하면서 상당수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추가 질문 사항은 상파울루 무역관 VOC 게시판에 문의하면 48시간 안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



III.

## 카테고리별 전문가 및 컨설팅 업체

### 1. 세무

---

○ **Wintec SGS Serviços Contábeis SS**

- C/P : 김산옥 회계사(Ms. Sandra)
- E-mail : sandra.wintec@gmail.com  
wintec21@uol.com.br
- Tel : (55-11) 2597-0630

### 2. 노무

---

○ **Pallotta Martins**

- C/P : Mauricio Pallotta

- E-mail : maurico@pallottamartins.com.br
- Tel : (55-11) 3231-0133 / Cel: (55-11) 99106-9965

### 3. 통관

#### 1) 업체명 : Acsa Cargo Logistics

- C/P : Meire Yamada
- E-mail : meire.yamada@acsatrans.com.br

\*상파울루 무역관 물류 분야 자문

#### 2) 업체명 : Pantos do Brasil Logística Ltda

- C/P : Jae Kim / 김재도
- 주소 : Av. Marcos Penteado de Ulhoa Rodrigues, 1119 Conj. 2205~2214 Tambore, Barueri - SP CEP: 06460-040
- E-mail : jaedo.kim@pantos.com
- E-mail : comercial.sp@pantos.com
- Tel : (55-11)3534-8510

### 4. 인증 대행 업체

#### ✓ ANVISA

	업체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1	Vera Rosa	Mrs. Sheyla Pires (Regulatory Affairs Manager)	(55-11) 3889-0875	sheyla.pires@verarasas.com.br	http://verarasas.com.br/en-us/

	업체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2	Emergo	Mr. Luiz Levy (Regulatory Affairs Manager)	(55-11) 3801-1101	luiz.levy@ ul.com	<a href="https://www.emergobyul.com/resources/brazil/all/all">https://www.emergobyul.com/resources/brazil/all/all</a>
3	Mandala	Mrs. Rafaela Bonchoski (Regulatory Affairs Manager)	(55-44) 3023-1710	tecnico.vr@ mandala- intl.com	<a href="http://www.mandala-intl.com/">http://www.mandala-intl.com/</a>

## ✓ INMETRO/ ANATEL

업체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NCC Certificações do Brasil * Bureau Veritas Group Company	Ms.Michele Moreira  Ms. Guisla Martins	(55 19) 99994- 6285 (55 19) 99255- 7400	michele. moreira@ ncc.com.br guisla. martins@ ncc.com.br	<a href="http://www.nccgroup.com.br">www.nccgroup.com.br</a>

\* Certifications: ANATEL; INMETRO; DENATRAN; ANP; ARTESP, ANTT and SPTrans

\* QMS: NBR ISO 9001; NBR ISO 13485

\* International Certifications: IECEX

## 5. 업체 연락처 및 사기 유무 확인

### ○ SERASA

<https://www.serasa.com.br/>

\* 기업의 재무 정보, 신용 채무 정보 등을 확인 가능하나 일반인이 접근하기는 어려운 관계로 문의 사항이 있을 시, 상파울루 무역관으로 연락 바랍니다.

### ○ BRF (SADIA/PERDIGAO)

- C/P : 신현일
- E-mail : hyunill.shin@brf-asia.com
- \* BRF 한국 지사 신현일 담당자를 통해 BRF의 셀러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 6. 주요 로펌/회계/통관 업체

### ✓ 주요 로펌(Full Service 제공)

#### ○ Tozzini Freire Teixeira e Silva Advogados

- 주소 : Rua Borges Lagoa 1328, 04038-904, São Paulo SP  
Brasil
- 전화번호: (55-11) 5086-5000
- 홈페이지: www.tozzini.com.br
- 이메일: skim@tozzinifreire.com.br(김신재 변호사)
- 한인 변호사: 김신재 변호사

#### ○ Machado, Meyer, Sendacze Opice Advogados

- 주소 : Rua da Consolação, 247, 4 andar, 01301-903, São Paulo, SP
- 전화번호 : (55-11) 3150-7000/3150-7071
- 홈페이지 : www.mmso.com.br
- 이메일 : mmso@mmso.com.br
- 한인 변호사 : 조인희 변호사

**○ Mattos Filho**

- 주소 : Rua Joaquim Eugenio de Lima 447, Jardim Paulista, São Paulo SP
- 전화번호 : (55-11) 3147-7600
- 홈페이지 : [www.mattosfilho.com.br](http://www.mattosfilho.com.br)
- 이메일 : [yelin.kim@mattosfilho.com.br](mailto:yelin.kim@mattosfilho.com.br) (김예린 변호사)
- 한인 변호사 : 김예린 변호사

고객의 소리(VOC)를 기반으로 작성한

## 실전 브라질 진출 가이드북

ISBN 979-11-402-0063-4 (95320)

저자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발행일 2021년 12월 31일

발행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